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2024. 12.

최인혁 · 권정교 · 문교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최인혁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권정교 세정연구팀 세무사

문교현 세정연구팀 세무사

목 차

I. 서론	1
1. 선행연구	2
II. 지급명세서 제출 납세협력 현황	4
1.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	4
가. 간이지급명세서	5
나. 연간지급명세서	9
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11
2. 소득자료 제출 의무 불성실에 대한 제재	12
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2
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16
3. 가산세 완화 및 보완의 필요성	18
가. 지급명세서 제도의 목적	18
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현황	22
다.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납세협력 비교	25
III. 해외 주요국의 사례	30
1. 영국	30
가. 원천징수 의무	30
나. 연말정산	33
다. 신고 절차	34
2. 스웨덴	38
가. 원천징수 의무	38
나. 종합소득세 신고	41

다. 신고 절차	42
3. 프랑스	45
가. 원천징수 의무	45
나. 종합소득세 신고	47
다. 신고 절차	49
4. 일본	52
가. 원천징수 의무	52
나. 연말정산(연간지급명세서)	55
다. 신고 절차	58
IV. 개선방안	63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완화 및 보완	63
가. 부과기준의 변경	63
나. 과태료 제도로 전환	66
다. 제도별 또는 소득별 차등 설정	71
2.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 통합	75
가. '소득내역확인' 시스템	75
나.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통합	78
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4대 보험 변경 신고 연동	80
3.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81
가. 급여 전용계좌와 스크랩 전용계좌의 비교	81
나.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86
4. 소결	87
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완화 및 보완	87
나.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 통합	90
다.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90
V. 결론	93
참고문헌	96

표 목차

〈표 II-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7
〈표 II-2〉 반기별 납부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제출주기 및 기한	8
〈표 II-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10
〈표 II-4〉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른 과세 제출 의무	12
〈표 II-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경감기한	14
〈표 II-6〉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경감기한	14
〈표 II-7〉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17
〈표 II-8〉 지급명세서 제도의 제출주기 연혁	20
〈표 II-9〉 「과세자료제출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협력 비교	26
〈표 II-10〉 소득자료 제출 제도 간 비교	28
〈표 III-1〉 영국의 PAYE를 통한 신고 일정	34
〈표 III-2〉 영국의 마지막 FPS를 수정하는 경우 제출 시기에 따른 수정 방법	36
〈표 III-3〉 영국의 가산세 부과 비율	38
〈표 III-4〉 일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종류	53
〈표 III-5〉 일본의 특례적용 시 원천징수소득세 납부 기한	55
〈표 III-6〉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 비교	62
〈표 IV-1〉 주요국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비교	65
〈표 IV-2〉 가산세와 과태료의 비교	68
〈표 IV-3〉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유무에 따른 가산세 부과	72
〈표 IV-4〉 스크랩 전용계좌 및 급여 전용계좌 비교	85
〈표 IV-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개선방안 제안 요약	92

그림 목차

[그림 III-1] 스웨덴의 개인 소득세 신고관리	44
[그림 III-2] 프랑스의 근로소득세 신고관리	51
[그림 III-3] 일본의 마이너포털 API 구조	60
[그림 IV-1] 소득의 종류에 대한 소명요청 안내문	74
[그림 IV-2] 소득내역 확인 및 소득부인 신청	76
[그림 IV-3]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79
[그림 IV-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거래흐름	82
[그림 IV-5] 급여 전용계좌 제도 거래흐름	84

I. 서론

- (연구 배경) 최근 적시적 소득 파악의 필요성 대두로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던바, 현행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적시적 소득 파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음
 - 적시적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가 기존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되는 등 제출의무자들의 협력 의무가 크게 강화됨
 - 반면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크게 정비되지 않아 제출의무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의 소득자료 제출 의무 변화 양상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해당 가산세 제도 운영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닌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협력의 무 이행 유도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기준 등이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않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소득자료 제출 의무 및 관련 제재 현황을 파악·정리하고, 가산세 제도 및 (간이) 지급명세서 제도의 도입·운영 목적에 비추어 가산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논의
 - 나아가 부과기준 변경 등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완화 내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 (연구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함

- 각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국가별 특성 및 차이를 파악하는 한편,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시 쟁점 및 고려사항 등을 도출
- (연구 구성)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장 제1절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
 - 제II장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 현황을 살펴봄
 - 2024년 12월 현재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및 관련 제재 현황 등을 파악·정리
 - 제III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 구체적으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상세히 검토
 - 제IV장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
 -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방안에 더해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납세협력의무 경감 방안,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 및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
 - 제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는 가운데 정책 시사점을 제시

1. 선행연구

-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게 한다는 점과 위반 시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납세협력의무 완화 및 관련 가산세 부담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음
 -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
- 정지선·류병관(2013)은 조세법상 불필요한 가산세 폐지 및 과도한 가산세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연구
 -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납세자 본인의 납세의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제출자료 건별로 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 김두천(2021)은 지급명세서 제출 문제에 대하여 논의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주요 세목의 신고기한과 맞물려 신고업무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 과잉 입법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 제도 도입 취지와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4대 보험공단과 소득내용 공유,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 유지, 가산세 한도의 축소가 필요함을 주장함

- 이한우(2022)는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 위반 가산세에 대하여 연구
 -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납세협력 의무에 해당함을 주장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역을 부표 형식으로 첨부하게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을 한 번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으로 종결하게 하는 것을 제안함
 - 아울러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경우 위반 건수 등에 일정한 정액의 가산세를 도입하는 것의 타당함을 주장함

- 임재혁(2024)은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제도와 해외의 원천징수제도를 분석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실시간 PAYE 정보 전송 시스템(RTI)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고의무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한편 원천징수된 세액이 미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추가로 제안함

Ⅱ. 지급명세서 제출 납세협력 현황

1.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신고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함¹⁾
 -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²⁾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일부 봉사료³⁾ 등이 있음⁴⁾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의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 개인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더불어 소득자료 제출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조
4) 「소득세법」 제127조

-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연간지급명세서’)가 있음
- 2021년 11월 11일 이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은 지급명세서와 유사한 제도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⁵⁾
- 사업장제공자 등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자료를 월별로 제출해야 함

가.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대상 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 소득은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일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임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임⁶⁾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다음과 같음
 -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⁷⁾으로 정하는 것⁸⁾
- 일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대가로 다음과 같음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5) 「소득세법」 제173조

6)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8)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저술·배우 등, 직업운동가, 접대부, 보험가입자의 모집, 강사 등)과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국선번호인, 학술연구용역, 가사서비스 등)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제출의무자) 제출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제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임

-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함

□ (제출주기 및 제출기한) 제출대상 소득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매 반기→매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시행될 예정임⁹⁾
 - 현재는 반기별 제출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제출주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됨
- 일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월별로 제출되어야 함
- 휴·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9)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3. 11. 30.

〈표 II-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유형	제출서식	제출주기 및 기한 ¹⁾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반기별 ²⁾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월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일부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주: 1) 휴·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제출주기가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될 예정임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기한은 일반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함

○ 반기별 납부¹⁰⁾ 신청 대상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임

- 대상자는 사전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을 경우 반기별 납부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반기별 납부에 대한 특례를 둠

○ 반기별 납부자라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일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일부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는 월별로 제출하여야 함
-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도 월별로 제출되어야 함

10)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표 II-2〉 반기별 납부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제출주기 및 기한

소득유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주기 및 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기한	
		현행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반기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월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월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일부 인적용역 기타소득		월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세제혜택) 소규모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임¹¹⁾
- 소규모사업자가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함
- 소규모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 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의미함
 -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임
 - 공제금액은 기재된 상용근로자 1인당 200원으로, 연간 한도는 300만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임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나. 연간지급명세서

- (제출대상 소득) 연간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임
- (제출의무자)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내국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¹²⁾임
- (제출주기 및 제출기한) 제출대상 소득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월별로 제출하여야 함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 중 상용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함

- (제출주기 단축)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분기별 제출에서 월별로 단축됨

〈표 II-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유형		제출서식 ¹⁾	제출주기 및 기한
근로 소득	일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월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상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연금소득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 험의 보험차익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주: 1) 비거주자는 제외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세제혜택)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음

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제출대상 소득)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인 용역제공대가임
 - 용역제공대가란 용역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한 대가를 의미함
 - 제출의무자가 전산자료, 증빙자료 등으로도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대가를 적지 않아도 됨

- (제출의무자) 2021년 11월 11일 이후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¹³⁾의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기 및 제출기한) 해당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세액혜택) 제출의무자는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⁴⁾
 - 세액공제액은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연간 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임

13)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육실종사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수하물운반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표 II-4〉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른 과세 제출 의무

소득유형	제출서식	제출주기 및 기한
사업소득 등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월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2. 소득자료 제출 의무 불성실에 대한 제재

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¹⁵⁾

- 연간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명세서상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됨
 - (연간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수정제출 등) 지급명세서 제출 후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됨
 - (연간지급명세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한도) 중소기업은 5천만원, 이 외의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함¹⁶⁾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15) 「소득세법」 제81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16) 「국세기본법」 제49조

-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연간지급명세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 함

- (가산세 경감)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50% 낮춰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1→0.5%)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0.25→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다만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표 II-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경감기한

소득유형	제출서식	제출기한	가산세 경감기한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상반기 (7월 말)	10월 말일
		하반기 (다음 연도 1월 말)	다음 연도 4월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월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²⁾
일부 기타소득 ¹⁾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주: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

2)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유예: 20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표 II-6〉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경감기한

소득유형	제출서식 ¹⁾	제출기한	가산세 경감기한
근로 소득	일용	월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상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10일
퇴직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연금소득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표 II-6〉의 계속

소득유형	제출서식 ¹⁾	제출기한	가산세 경감기한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말일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 의 보험차익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주: 1) 비거주자는 제외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유예)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시작할 때 소규모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였음
 - 소규모사업자¹⁷⁾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분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또한 2022년 세계개편안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1년간 면제하는 특례를 두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26년 1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자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반기별로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해야 함

- (국가기관 등 가산세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¹⁸⁾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더라도 법인세로 과세하는 가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¹⁹⁾

17)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의거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자를 의미함

18)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중 일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함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함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 중복 적용 대상임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함²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함
-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면제) 20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함

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²¹⁾

- 제출의무자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시정명령이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는 것을 의미함
 - 시정명령은 귀속 월에 따른 제출명세서별로 구분하여 실시함

19) 조심2008구3427

20)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2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

-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시정명령 위반 행위별로 구분하여 제출명세서 건별로 부과함
 - 과태료는 2천만원을 한도로 부과함

〈표 II-7〉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제출서식	제출주기 및 기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매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령 ¹⁾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령 ²⁾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명령 ³⁾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주: 1)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를 의미함
 2)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자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3. 가산세 완화 및 보완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지급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또는 수정제출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강제하고 있는 한편, 제출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소극적인 편임
- 본 절에서는 ① 지급명세서 제도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 ② 지급명세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가산세만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③ 지급명세서 제도와 유사한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완화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자료’로 지급명세서를 통해 수집된 소득자료는 과세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지급명세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는 가산세 제도와 세제 혜택 등이 있음
 - 우리나라 국세청은 다양한 루트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과세자료법과 개별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개별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 등을 수집하여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소득 파악을 위해 제출주기가 짧은 간이지급명세서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수집하고 이와 별도로 연간 단위로 제출하는 연간지급명세서를 최종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가. 지급명세서 제도의 목적

1) 지급명세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 국세청은 2018년까지 연간지급명세서 제도를 통해 분기별²²⁾ 또는 연간 단위로 소

22) 일용근로소득

특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등²³⁾의 소득자료를 수집해 왔음

-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2018년까지의 소득 지급분에 대해 연간지급명세서를 연 1회 (단, 일용근로소득은 분기별) 제출했음

- 그러다 2018년 7월 31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입법함²⁴⁾
- 2019년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말일에서 10일까지로 단축됨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에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단축됨
- 2019년부터 근로자의 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자료에 대해 연간지급명세서와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이후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거나 제출 대상 소득을 확대함
 - 2021년 7월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제출주기를 단축함
 -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제출주기를 단축함
 - 2024년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으로 추가됨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별로 제출해야 함
 - 2026년부터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월별로 예정되어 있음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제도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함²⁵⁾

23)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24)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18. 7. 31.

〈표 II-8〉 지급명세서 제도의 제출주기 연혁

구분 ¹⁾		2019년 이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예정)
연간지급명세서		연 1회 (단, 일용 근로소득은 분기별) ²⁾	연 1회 (단, 일용 근로소득은 분기별) ³⁾	연 1회 (단, 일용근로소득은 월별)		
간이 지급 명세서	상용근로	-	연 2회(반기별) ⁴⁾			연 12회 (월별)
	사업소득		연 2회 (반기별)	연 12회(월별)		
	기타소득		-	연 12회(월별)		

주: 1) 제출 대상 소득을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함

2) 제출기한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

3) 제출기한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

4)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세계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2) 지급명세서의 활용

-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도를 통해 개인의 소득 정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 빅데이터, 국세 통계자료, 다른 기관 과 소득 자료 연계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음
 - 정부의 행정자료 중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소유한 곳은 국세청이 유일함
-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의 도입으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음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활용할 수 있음

25)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3. 11. 30., p. 8.

-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임

- 국세청은 연간지급명세서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개인의 다양한 소득에 대한 원천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수집된 정보로 과세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를 통해 개인의 연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함
 - 제출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확보한 것이므로 동 금액만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음
 - 지급명세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 자료와 제출된 신고서의 검증자료로 활용됨
 - 지급명세서의 소득자료는 신고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되고 있음
 - 미리·모두채움서비스, 환급금 찾아주기, 맞춤형 신고자료 등
 - 또한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국세청은 소득 관련 자료를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제공하기도 하지만 제공받는 기관의 용처에 따라 원천자료가 아닌 자료 중 일부만을 제공함²⁶⁾
 -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소득 관련 자료를 연계 및 제공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기관으로 2003년 귀속 소득부터 전 국민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 통계청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가계금융복지조사’²⁷⁾ 자료의 일부로 대체함

26) 박형준,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구성: 국세 과세 미시자료의 활용 사례」,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9권 제2호, 2022., p. 109.

27) 우리나라 공식 소득분배지표 생산 근거 자료

- 소득 관련 원천자료의 제공은 「국세기본법」의 비밀 유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비과세소득 등 사회보험료 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는 전 국민 중 수급 대상 인구의 자료만 제공됨

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현황

- 세법상 납세협력 의무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제도로는 가산세 제도, 세제혜택 등이 있음
- 가산세 제도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어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과도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함
- 반면 세법상 납세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여 의무 이행을 유인하는 제도적 방안인 세제혜택은 실질적인 세부담이 완화되므로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

1) 가산세 제도

- 가산세는 세금의 원래 금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이 더해져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임
 - 「국세기본법」에서는 가산세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²⁸⁾와 개별 세

28)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관련 가산세로 분류되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포함됨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대한 것으로 납세당사자에게 부과함
- 개별 세법²⁹⁾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는 다양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으며, 소득자료 제출 등 각종 납세협력을 의무화하여 그 의무의 위반 또는 불성실에 대해 제출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기도 함

□ 가산세는 조세 형식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벌과 구별됨³⁰⁾

○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 형벌, 행정질서벌에 따른 제재, 세법에 따른 가산세 제도가 있음³¹⁾

-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으로 별도로 규제하는데 행정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여부 파악이 어려움
- (행정질서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세권 또는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 행정질서벌 혹은 과태료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직접 단속 가능하며 처리 절차가 형사 절차 대비 효과적이지만 형사벌에 비해 징벌 효과는 부족함
- (세법)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개별 세법 입법 취지에 따라 조세형벌 또는 행정질서벌에 따른 과태료의 목적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있음

□ 가산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협력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데에 있음

○ 가산세 제도는 금전적 제재임

- 우리나라 가산세액은 보통 미납세액 또는 신고 의무와 연동되어 비율로 산정됨

29)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30) 김경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조세법연구』, 29(3), 2023, p. 11.

31) 박승식·박상연, 「납세협력을 위한 가산세 및 조세혜택 제도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103, 2022. 6., pp. 62~64.

- 가산세 제도의 존재 이유는 납세의무 미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도의 목적은 제출 의무가 있는 자의 자발적인 소득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음

2) 세제혜택

- 납세협력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 비과세, 소득공제, 소득감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가산세 제도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인 반면, 세제혜택은 의무이행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의무 이행을 유인하는 제도적 방안임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출한 금액에 대해 세법상 비용(손금,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받고 인건비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연간지급명세서는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음
- 지급명세서 제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① 가산세 감면제도와 ② 한시적으로 일부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음
 - (가산세 감면제도)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50% 낮춰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세액공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사업자가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함

다.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납세협력 비교

1) 「과세자료법」과 개별 세법

- 「국세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과 「소득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국세청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과세자료제출기관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³²⁾으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은 별표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³³⁾
 - 「과세자료법」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동법 제5조 제1항³⁴⁾에 열거되어 있음

- 과세자료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의 장은 문서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³⁵⁾

3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3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 관련)

34) 1.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는 「과세자료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제도는 없음
- 「과세제출법」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세청은 「과세자료법」 외에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라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개별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별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 개별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소득자료 제출 등 각종 납세협력을 의무화 하여 그 의무의 위반 또는 불성실에 대한 것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함

〈표 II-9〉 「과세자료제출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협력 비교

법령	「과세자료법」	개별 세법
목적	•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	•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기 위한 원천자료 확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변호사·사회·공인회계사·세무사회 등 「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로 열거되어 있음	• 개별 세법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과세자료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부 ¹⁾	여 ²⁾

35) 「과세자료관리규정」 제14조~제16조

〈표 II-9〉의 계속

법령	과세자료법	개별 세법
과세자료 제출 시 세제혜택 여부	부	여 ³⁾

주: 1) 관할기관의 장은 문서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2) 개별 세법으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음

3) 개별 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작성

- 우리나라는 「과세자료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개별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 제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사업장제공자 등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금액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서임
 -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개인별 소득내역에 대한 신고서임
 - 연간지급명세서 역시 소득자의 개인별 소득내역에 대한 신고서이지만 제출대상 소득 중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개인별 소득세 정산에 필요한 정보가 연간지급명세서로 제출됨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신고서임

〈표 II-10〉 소득자료 제출 제도 간 비교

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일부 인적용역 기타소득	근로소득(상용 및 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봉사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용역제공 대가
제출주기	- 월별 (단,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 상용근로소득: 반기별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월별	- 연도별 (단, 일용의 경우 월별)	- 월별
제출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내역(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자의 개인별 소득내역	소득자의 개인별 소득내역 및 일부 소득의 경우 개인별 소득세 정산내역	용역제공자의 개인별 용역제공 대가
제출의무자의 소득세 정산의무	× ¹⁾	×	○ ²⁾	×
제재사항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금액의 0.2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금액의 1%)	과태료(미제출 건별 정액 금액)
제출에 대한 세제혜택	×	× ³⁾	×	○ ⁴⁾

주: 1)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함

2) 상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소득세 정산의무를 부여함

3) 2026년부터 시행될 상용 근로소득의 월별 제출에 대해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시행될 예정임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신고서 정보의 주체는 다르지만 서로 보완적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정보를 담은 신고서인 반면,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원천징수 대상 소득 정보를 담은 신고서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종류 등 제출
한 내용을 상호 검증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소명요구, 수정신고 안내 등 사후 관리 대상이 되고,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를 대신하여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함

□ 반면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없음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제출대상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대리기사, 쿼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임
- 제출에 대해 세액공제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함
- 소득에 대한 정산 의무는 없음

□ 신고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고서별 제출, 신고서별 가산세 부과, 일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 의무 등 소득자료 제출에 대한 납세협력 의무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존재함

Ⅲ.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영국

- (원천징수) 영국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임³⁶⁾
 - 영국 거주회사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없음
 - 2016년 4월 6일부터 금융기관은 이자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

- (연말정산) 영국은 2013년 RTI(Real Time Inform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의무는 없으나³⁷⁾ 과세연도 종료 시 최종 원천징수 신고서(final payroll report)를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명세서를 교부해야 함³⁸⁾

가. 원천징수 의무

- (대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세무정보(급여, 고용관계 등)를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국세청 시스템인 PAYE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36)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26 May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k_s_1.10.3.%23ita_uk_s_1.10.3., 검색일자: 2024. 8. 20.

37) HMRC, "Issue briefing: Real Time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odernising-payee-real-time-information>, 검색일자: 2024. 8. 20.

38) HMRC, "Payroll: annual reporting and tasks," <https://www.gov.uk/payroll-annual-reporting/send-your-final-payroll-report>, 검색일자: 2024. 8. 20.

- (세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별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과세관청은 동 자료를 근거로 소득자별 납세코드를 부여함³⁹⁾
 - 납세코드(tax code)는 소득에서 공제할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됨
 - 소득자에게 부여된 납세코드를 급여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연중 급여에서 공제할 세금이 계산됨
 - 과세연도가 시작될 때마다 소득자의 납세코드를 업데이트해야 함
 - 가장 일반적인 납세코드는 1257L로, 직업이 하나이며 비과세 소득, 미납세금, 과세혜택이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코드임
 - 소득자는 HMRC 온라인⁴⁰⁾ 및 앱, 급여명세서 등에서 개인본인의 납세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별 납세코드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함
 - 예외적으로 영세사업자 등 온라인 신고가 면제된 사업자의 경우 간이세액표 (Taxable Pay Tables)에 따른 원천징수를 허용함

- (신고·납부)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는 HMRC이 인증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FPS(Full Payment Summary)와 필요한 경우 EPS(Employer Payment Summary)를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함⁴¹⁾
 -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득자의 급여정보 기록,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 등 원천징수 세액 계산, 급여명세서 작성 등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외의 경우 과세관청이 인증한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 FPS를 제출해야 함⁴²⁾

39) HMRC, "Tax codes," <https://www.gov.uk/tax-codes>, 검색일자: 2024. 8. 20.

40) HMRC, "Check your Income Tax for the current year," <https://www.gov.uk/check-income-tax-current-year>, 검색일자: 2024. 8. 20.

41) HMRC, "Find payroll software," <https://www.gov.uk/payroll-software/free-software>, 검색일자: 2024. 8. 20.

42) HMRC, "Running payroll-Reporting to HMRC: FPS," <https://www.gov.uk/running-payroll/reporting-to-hmrc>, 검색일자: 2024. 8. 20.

- 급여 정규지급일에 FPS를 작성하여 보고함
 - FPS를 전송한 후 다음 달 10일부터 납부할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FPS를 통하여 근로자 정보를 보고함⁴³⁾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다음 달 19일까지 EPS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회보장과 관련한 내용임⁴⁴⁾
- 과세 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
 - 산휴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함
 - 건설산업제도(CIS)에 따른 공제를 받음
 - 고용수당(employment allowance)을 청구하거나 철회함
 - 견습세(apprenticeship levy)를 지불함
- (처벌) 원천징수의무자가 FPS와 EPS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벌금 (penalty)이 부과되며,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가산세가 부과됨
- (벌금)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까지는 부과하지 않으며 3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근로자의 수가 1~9인 경우 100파운드, 10~49인 경우 200파운드, 50~249인 경우 300파운드, 250 이상인 경우 400파운드임⁴⁵⁾
- 2개 이상의 PAYE 제도를 운영하면 각각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가산세) 신고의 오류를 정정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인 잠재적 결손 세입 (potential loss revenue)의 일부로 부과함⁴⁶⁾

43) HMRC, "Tell HMRC about a new employee," <https://www.gov.uk/new-employee?step-by-step-nav=47bcd4c-9df9-48ff-b1ad-2381-ca819464>, 검색일자: 2024. 8. 20.

44) HMRC, "Running payroll-Reporting to HMRC: EPS," <https://www.gov.uk/running-payroll/reporting-to-hmrc-eps>, 검색일자: 2024. 8. 20.

45) HMRC, "What happens if you do not report payroll information on time," <https://www.gov.uk/guidance/what-happens-if-you-dont-report-payroll-information-on-time>, 검색일자: 2024. 9. 23.

46) HMRC, "Compliance checks for penalties of inaccuracies in returns or documents (CC/FS7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liance-checks-penalties-for-inaccuracies-in-returns-or-documents-ccfs7a>, 검색일자: 2024. 9. 23.

나. 연말정산

-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final payroll report)⁴⁷⁾를 과세연도 4월 5일까지, 소득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관련 신고서식인 P11D를 다음 연도 7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함
- (소득세 정산) 국세청은 과세연도⁴⁸⁾ 말 이후 6월에서 11월 사이 해당 소득자에게 정확한 세액이 계산된 세액고지서(P800)를 발송하여 환급청구 또는 추가납부를 가능하게 함⁴⁹⁾
 - RTI 제도 도입으로 소득자의 소득 정보가 실시간 보고되어 소득자별 소득세 정산이 바로 이루어지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나 고용관계 변화 등⁵⁰⁾으로 세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산이 이루어지며, 과다 납부의 경우 7월에 환급되고 과소 납부의 경우 9월까지 납부함
- (복리후생 정산) 소득자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항목별 또는 케이스별로 비과세, 소득세 또는 국민보험료 과세 여부 등이 상이함⁵¹⁾
 -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케이스(업무보안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는 P11D의 보고의무가 없음
 - 국민보험료만 과세되는 케이스, 소득세만 과세되는 케이스 등 항목별로 다양하게 존재함

47)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의 서식이 아닌 FPS의 최종 보고를 의미함

48) 과세연도는 매년 4월 6일부터 익년 4월 5일까지임

49) HMRC, "Tax overpayments and underpayments," <https://www.gov.uk/tax-overpayments-and-underpayments>, 검색일자: 2024. 8. 20.

50) 종전 퇴사 후 같은 달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근로지원수당이나 구직자 수당을 수령하는 자

51) HMRC, "Expenses and benefits: A to Z,"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a-to-z>, 검색일자: 2024. 8. 20.

〈표 III-1〉 영국의 PAYE를 통한 신고 일정

구분	4월 6일~	5월	6월 ~ 4월 5일
원천징수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PS 보고¹⁾ 후 익월 22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²⁾ • EPS 보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달 19일까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6일부터 소득자 납세코드 등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P60)³⁾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11D⁴⁾는 7월 6일까지 제출 • 과세연도 마지막 급여일(4월 5일 종료) 또는 그 이전에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final payroll report)' 제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인 P60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단, 원천징수세액이 적정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전년도 소득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6월~11월 사이 P800(a tax calculation letter)를 소득자에게 발송 		

주: 1)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6일부터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FPS를 실시간 제출하면 됨

2) 소규모사업자는 분기별 납부 가능

3)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P60을 교부

4) 근로자 등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관련 신고서식으로 복리후생 항목별로 비과세, 소득세 또는 국민보험료 과세 여부 등이 상이함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신고 절차⁵²⁾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소득자료는 PAYE(Pay As You Earn) 제도를 통해 과세당국인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로 보고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PAYE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Companies House⁵³⁾에 '회사'를 등록해야 함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마다 FPS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한 다음 달 19일까지 EPS를 제출해야 함
 - FPS는 주기(주 단위, 격주 단위, 4주 단위, 월 단위로 설정)별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신고서식임

52) EY, *Worldwide Doing Payroll Guide 2022-23*, 2022. 11., pp. 438~442.

53) MINT Formations, "Hassle-Free Companies House Registration," <https://www.mintformations.co.uk/companies-house-registration/>, 검색일자: 2024. 8. 20.

- FPS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과세연도, 입퇴사일, 소득자 인적사항(주소 등), 소득자 급여정보(급여일, 제출 당시까지 총급여 및 총세금, 납세코드, 공제내역 등), 국민보험료, 주소변경 내역, 학자금 대출내역 등
 - 소득자 주소의 경우 변경 내역을 관리해야 하는데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스 거주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FPS 또는 EPS의 항목 중 급여 또는 공제액, 지급일자, 입퇴사일, 인적사항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정방식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급여 또는 공제액) 당해 과세연도의 착오를 수정하는 경우와 마지막 FPS의 착오를 수정하는 경우의 수정방식이 다름
 - 연도 중 제출한 FPS의 착오는 다음 달 명세서의 연간누계금액으로 조정함
 - 마지막 FPS(final FPS)의 착오는 정확한 연간누계금액을 기재한 별도의 FPS를 제출함
- (지급일자) 지연신고사유란에 이전제출정정으로 기재하여 추가 FPS를 제출함
 - 기제출한 FPS를 보낸 다음 과세월의 19일까지 정정된 FPS를 제출해야 함
- (입퇴사일) 기제출한 급여기록에 올바른 날짜로 업데이트하면 됨
 - 중복기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예정인 FPS에는 수정된 입퇴사일을 보고하지 아니함
- (인적사항)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착오로 제출된 경우 기제출한 급여기록에 올바른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됨⁵⁴⁾
 -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업데이트하면 됨
 -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를 확인하여 소득세 변동이 필요한 경우 소득의 변동을 업데이트하면 됨
- (EPS 금액) 연간누계액이 포함된 EPS를 제출함

54) HMRC, "Tell HMRC about a change to your personal details," <https://www.gov.uk/tell-hmrc-change-of-details>, 검색일자: 2024. 8. 20.

〈표 III-2〉 영국의 마지막 FPS를 수정하는 경우 제출 시기에 따른 수정 방법

구분	수정명세서 제출시기	수정 방법
잘못된 지급 또는 공제	4월 19일까지	• 정확한 연간누계액을 기재한 FPS를 추가로 제출하고 '이 기간의 지급'에 '0'을 기재
	4월 19일 이후	• 정확한 연간누계액을 기재한 FPS를 제출
지급날짜	4월 5일까지	• 정확한 지불 날짜를 기재한 FPS를 추가로 제출하고 '이 기간의 지급'에 '0'을 기재

자료: HMRC, "Payroll: annual reporting and tasks," <https://www.gov.uk/payroll-annual-reporting/send-your-final-payroll-report>, 검색일자: 2024. 9. 21.

- HMRC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의 부정확한 정보(inaccuracy)로 인해 FPS 또는 EPS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고의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⁵⁵⁾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감면하기도 함
 - (가산세 부과)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부정확한 정보로 세금이 미납되거나 과소 신고, 과다 청구되는 경우
 -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거나 고의적이고 은폐된 경우
 - (가산세 감면) 올바른 세액 신고를 위해 상당한 주의(resonable care)를 기울였음을 증명한다면 국세청은 가산세를 경감 또는 부과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징수에 협조적인 경우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경감(quality of disclosure)함
 - 납세자가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즉시 그 정도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경우
 - HMRC의 질문에 지연 없이 전부 답하고 협조하는 경우
 - HMRC의 소명요청에 빠르게 답장하는 경우
 - 부정확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한 자료를 협조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 HMRC가 파악하지 못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55) HMRC, "Fix problems with running payroll," <https://www.gov.uk/payroll-errors/correcting-your-fps-or-eps>, 검색일자: 2024. 9. 23.

- (가산세 미부과) 다음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FPS의 제출이 지연되었지만 FPS에 보고된 모든 지급이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인 경우(지급일 이후 3일 이내 정기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주의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첫 번째 FPS를 제출하는 경우
 - 각 과세연도의 한 번의 지연신고인 경우
 -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무고문이나 국세청에 문의해도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HMRC와 원천징수의무자는 협력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를 'behaviour'이라 하고 'behaviour'에 따라 가산세의 범위가 달라짐
 - 'behaviour'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음
 - (합리적인 주의) 정확한 세무신고를 위해 충분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세무고문이나 HMRC에 문의하여 주어진 조언에 따름
 - (부주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
 - (고의) 비용의 과다, 소득의 과소, 원천공제하지 않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의 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 (은닉) 제출한 신고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HMRC에 이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비율은 여섯 가지 범위로 나뉨

〈표 III-3〉 영국의 가산세 부과 비율

구분	HMRC 인지 전 자진신고	HMRC가 인지한 경우
합리적인 주의	가산세 없음	가산세 없음
부주의	0~30%	15~30%
고의	20~70%	35~70%
은닉	30~100%	50~100%

자료: HMRC, “Compliance checks — penalties for inaccuracies in returns or documents — CC/FS7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liance-checks-penalties-for-inaccuracies-in-returns-or-documents-ccfs7a/compliance-checks-for-penalties-of-inaccuracies-in-returns-or-documents-ccfs7a-factsheet>, 검색일자: 2024. 9. 23.

2. 스웨덴

- (원천징수) 스웨덴의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크게 고용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의 범주로 구성되며, 사업소득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A-skatt 방식)과 사업소득 대상인 자의 균등 선납 방식(F-skatt 방식)으로 구분됨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정기 지급금 등 고용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일부 자본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임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고용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에 대해 매년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가. 원천징수 의무

- (대상) 고용주가 사업소득(F-skatt 방식) 승인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하거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고용주로 등록한 후 매달 원천징수(PAYE)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⁵⁶⁾

- (세울) 고용주가 지급하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 수령인의 주된 소득인 경우 간이세액 표에 따른 세액 또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른 예상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 부담 분 사회보장기여금 등도 함께 원천징수함
 -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필요한 세액표나 스웨덴 국세청의 특별 결정 여부를 보여주는 증명서(A-skattsedel)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고용자(A-skatt 방식) 정보를 보유해야 함⁵⁷⁾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거주지역, 연령 등의 상황을 고려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며,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등의 경우 일시금에 대한 세액표에 따라 공제됨
- (신고·납부) 고용주는 지급일의 다음 달 12일(26일)까지 국세청 전자계정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각 근로자에 대한 정보(개인 식별번호, 명세서 번호,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을 시 사업장 번호 등), 보수액, 경비공제액, 원천징수세액, 사회보장기여금 공제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급여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제출
 - 연간 매출액이 4천만크로나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2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4천만 크로나를 초과하면 다음 달 2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⁵⁸⁾

56) Skatteverket, "Filing a PAYE tax return," <https://www.skatteverket.se/servicelankar/other-languages/inenglish/businessesandemployers/startingandrunningaswedishbusiness/declaringtaxesbusinesses/submitpayetaxreturn.4.2cf1b5cd163796a5c8b107cd.html>, 검색일자: 2025. 1. 20.

57) verksamt.se, "Skatteavdrag vid utbetalning av lön," <https://www.verksamt.se/driva/anstalla/vad-kostar-det-att-ha-anstallda-skatteavdrag>, 검색일자: 2025. 1. 20.

58) Skatteverket, "När ska jag lämna arbetsgivardeklaration?,"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arbetsgivare/lamnaarbetsgivardeklaration/narskajaglamnaarbetsgivardeklaration.4.361dc8c15312eff6fd13c11.html>, 검색일자: 2025. 1. 20.

- (처벌) 해당 월에 고용소득 지급액이 없더라도 고용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한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신고서 미제출 및 부실제출 시 연체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과소 납부 시 연체이자 발생할 수 있음⁵⁹⁾
- (연체료) 원천징수신고서 미제출 시 연체료 625코로나가 부과됨⁶⁰⁾
-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625코로나의 연체료를 추가하고, 5개월 이상 미제출한 경우 625코로나의 연체료를 추가함⁶¹⁾
- (가산세) 원천징수신고서 미제출, 부실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재량으로 결정한 후 5%의 가산세를 더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⁶²⁾
- 국세청이 결정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⁶³⁾
 - 국세청 결정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부과된 가산세가 취소되지 않음⁶⁴⁾
- (연체이자) 세금연체 발생 시 6개월 만기 국채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이자율 상시 변동)하며 2024년 12월 1일 기준 연체 발생 시 기본 2.5%의 연체이자 발생(납부 기한 연장 승인 등 사유가 있는 경우)되며, 최대 17.5%까지 부과될 수 있음⁶⁵⁾

59) Skatteverket, "När ska jag lämna arbetsgivardeklaration?,"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arbetsgivare/lamnaarbetsgivardeklaration/narskajaglamnaarbetsgivardeklaration.4.361dc8c15312eff6fd13c11.html>, 검색일자: 2025. 1. 20.

60) 「조세절차법」 제48장 제6조

61) 「조세절차법」 제48장 제7조

62) 「조세절차법」 제49장 제9조, 제18조

63) 「조세절차법」 제49장 제7조

64) 「조세절차법」 제49장 제8조

65) Skatteverket, "Ränta på skattekontot,"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skatteerochavdrag/skattekontobetalaochfatillbaka/ranta.106.233f91f71260075abe8800010888.html>, 검색일자: 2025. 1. 20.

나. 종합소득세 신고

- (대상) 스웨덴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만 4,237크로나⁶⁶⁾)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고용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2024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2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신고 방식의 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제공
 - 해당 신고서 양식에는 고용주와 은행 등 제3자가 제공한 소득이나 이자 등의 명세서를 통해 과세당국이 획득한 모든 정보를 포함
 -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정보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제출은 전화, SMS, 국세청 앱 또는 웹사이트, 우편으로 가능
- (처벌) 소득세 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이 재량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연체료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발생할 수 있음
- (연체료) 소득세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250크로나의 연체료를 부과함⁶⁷⁾
 -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250크로나의 연체료를 추가하고, 5개월 이상 미제출한 경우 1,250크로나의 연체료를 추가함⁶⁸⁾
- (가산세) 소득세 신고서를 미제출, 부실제출한 경우 국세청이 재량으로 결정한 후 신고 누락액에 일정한 가산세를 부과함⁶⁹⁾
 -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하고, 허위 정보의 내용이 수정 가능한 경우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하나, 허위 정보

66) Skatteverket, "Vem ska deklarerera?," <https://www.skatteverket.se/privat/deklaration/vems-kadeklarerera.4.2b543913a42158acf800013571.html>, 검색일자: 2025. 1. 20.

67) 「조세절차법」 제48장 제6조

68) 「조세절차법」 제48장 제7조

69) 「조세절차법」 제49장 제11조, 제13조

- 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지 아니함⁷⁰⁾
- 국세청이 결정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⁷¹⁾
- 국세청 결정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부과된 가산세가 취소되지 아니함⁷²⁾
- (연체이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의 2월 14일 이전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6개월 만기 국채 평균 이자율 기준 변동)가 부과될 수 있음⁷³⁾

다. 신고 절차⁷⁴⁾

-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F-skatt 방식) 승인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하거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로 등록해야 함
 - 고용주 등록은 고용주 웹사이트(verksamt.se)⁷⁵⁾를 통하거나 사업자등록 신청서(SKV 4620)⁷⁶⁾를 작성하며, 서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고용주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첫 급여 지급일, 연간 급여 지급 개월 수, 연간 예상 고용인원, 연간 예상 급여 지급액 등임
- 모든 급여 관련 신고는 PAYE를 통해 이루어짐

70) 「조세절차법」 제49장 제10조

71) 「조세절차법」 제49장 제7조

72) 「조세절차법」 제49장 제8조

73) Skatteverket, "Ränta på skattekontot,"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skatteochavdrag/skattekontobetalaochfatillbaka/ranta.106.233f91f71260075abe8800010888.html>, 검색일자: 2025. 1. 20.

74) Skatteverket, "Filing a PAYE tax return," <https://www.skatteverket.se/servicelankar/otherlanguages/inenglish/businessesandemployers/startingandrunningaswedishbusiness/declaringtaxesbusinesses/submitpayetaxreturn.4.2cf1b5cd163796a5c8b107cd.html>, 검색일자: 2025. 1. 20.

75) 회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임

76) Skatteverket, "Företagsregistrering,"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etjansterochblanketter/blanketterbroschyrrer/blanketter/info/4620.4.6efe6285127ab4f1d2580003836.html>, 검색일자: 2025. 1. 20.

-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월별 PAYE 세금신고서에 각 고용인에 대한 납부액 및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해야 함
 - 일반적으로 PAYE 신고서를 전자적 형태인 'Lämna arbetsgivardeklaration' 을 사용하여 제출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자와 관련된 세부정보는 스웨덴의 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으로 자동 통보되며, 이 정보는 스웨덴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활용됨

- 이미 제출된 원천징수신고서상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회계기간에 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⁷⁷⁾ 잔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클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하여 원천징수세액 정정 가능⁷⁸⁾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더 낮은 금액으로 정정할 수 없으며, 신고금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다음 달 신고서에서 조정 가능
 -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전자식별을 사용하는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skatt를 변경하는 Jämkning(SKV 4302)을 작성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조정 결정이 다음 연도 1월부터 적용 되기를 원하는 경우 늦어도 직전연도 11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
 - 국세청은 2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새롭게 결정된 세율은 2주 후 첫 번째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고용주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

77) Skatteverket, "Rätta en arbetsgivardeklaration,"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arbetsgivare/lamnaarbetsgivardeklaration/rattaenarbetsgivardeklaration.4.2cf1b5cd163796a5c8b6698.html>, 검색일자: 2025. 1. 20.

78) Skatteverket, "Jämkning - betala rätt skatt från början," <https://www.skatteverket.se/privat/skatter/arbeteochinkomst/jamkning.4.71004e4c133e23bf6db8000110771.html>, 검색일자: 2025. 1. 20.

[그림 III-1] 스웨덴의 개인 소득세 신고관리

Deklaration

Här hittar du information om inkomstdeklarationen du ska lämna för inkomståret 2024. Du kan deklarerera från den 18 mars. Sista dagen att deklarerera är den 2 maj 2025.

Deklarera i e-tjänsten Inkomstdeklaration 1

Ska du bara godkänna din deklaration kan du göra det genom att logga in i e-tjänsten med din e-legitimation eller dina koder, om du har fått sådana. Koderna finns i informationsbrevet och i specifikationen till deklarationen. Ska du ändra eller lägga till uppgifter i deklarationen behöver du logga in med din e-legitimation.

Inkomstdeklaration 1

07-03

i

Aktuella datum

12 februari: Du som räknar med kvars katt på över 30 000 kronor och vill undvika kostnadsränta, ska ha gjort en skatteinbetalning av den del som överstiger 30 000 kronor.

[→ Datum för deklarationen 2025](#)

Så här deklarerar du



Skaffa digital brevlåda

Med en digital brevlåda får du post från Skatteverket digitalt i stället för på papper. Du har alltid tillgång till din post och tar emot den snabbt, säkert och miljövänligt.

[→ Digital brevlåda](#)

Om du har sålt en bostad

Direkt efter att du har sålt en bostad kan du fylla i och spara uppgifter om försäljningen. Du kan också få hjälp att räkna ut dina avdrag för renoveringar.

[→ Försäljning av bostad](#)

자료: Skatteverket, “DeKlaration,” <https://www.skatteverket.se/privat/deklaration.4.2b543913a42158acf800013508.html>, 검색일자 : 2025. 1. 20.

- 스웨덴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고 국세청 앱, 전자 서비스 Inkomstdeklaration 1, 문자, 전화, 서면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⁷⁹⁾

79) Skatteverket, “Så här deklarerar du,” https://www.skatteverket.se/privat/deklaration/saha_rdeklarerardu.4.2b543913a42158acf800013564.html, 검색일자: 2025. 1. 20.

3. 프랑스

- (원천징수) 프랑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제도(Prélèvement À la Source, PAS)’를 시행하기 시작⁸⁰⁾하였으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공공재정부(The Public Finance Directorate General, DGFIP)가 전자적으로 전송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하여 납부함⁸¹⁾
- (종합소득세)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는 매년 5~6월(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 신고는 가족 단위(foyer fiscal)를 원칙으로 가족 단위가 부부인 경우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나 일정한 경우 개인 소득에 따른 개별 세율도 선택할 수 있음⁸²⁾

가. 원천징수 의무

- (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소득세(IR)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⁸³⁾으로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의 모든 과세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면세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⁸⁴⁾
- (세율) 공공재정부는 매년 9월 직전연도 귀속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율을 결정하여 회사에 전송함⁸⁵⁾

80) legifrance, “LOI n° 2018-1317 du 28 décembre 2018 de finances pour 2019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7882341>, 검색일자: 2024. 11. 19.

81) impots.gouv.fr, “Les modalités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https://www.impots.gouv.fr/les-modalites-du-prelevement-la-source-0#ancr6>, 검색일자: 2024. 11. 19.

82) economie.gouv.fr, “Le prélèvement à la source de l’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cedef/prelevement-source-impot>, 검색일자: 2024. 11. 19.

83) 근로소득, 연금소득, 산업 및 상업 이익, 농업이익, 비상업이익, 재산소득 등(프랑스 세법 제204A조 제1항)

84) economie.gouv.fr, “Entreprises : les modalités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impots-prelevement-source-2019-entreprises-collecte#quels-sont-les-revenus-soumis-au_1, 검색일자: 2024. 11. 19.

85) economie.gouv.fr, “Comment gérer votre taux de prélèvement à la source ?,”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modifier-gerer-taux-prelevement-source>, 검색일자: 2024. 11. 25.

- 공공재정부로부터 원천징수세율을 전송받지 못한 경우(신규입사자, 임시근로자 등) 금융법에서 결정된 요율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⁸⁶⁾
 - 납세자는 해당 연도의 가구상황(결혼, 이혼, 출산, 사망 등)이나 소득(5% 이상) 등이 변동되는 경우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신고·납부) 회사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명목 사회 보장(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DSN)’ 또는 ‘기타소득(Passage pour les Revenus Autres, PASRAU)’에 따라 신고 후 등록 은행계좌에 납부함
- (DSN) 회사가 DSN을 신고하면 필요한 정보를 각 관련 행정기관에 전송함⁸⁷⁾⁸⁸⁾
 - 5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당월 귀속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DSN을 전송해야 함
 - 5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당월 귀속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또는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경우(지급일 관계없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DSN을 전송해야 함
 - (PASRAU) 회사가 사회보험료의 신고·납부가 필요 없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DSN과 별개로 PASRAU에 근로자의 원천세 정보를 전송함⁸⁹⁾
 - 근로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PASRAU를 전송해야 함
 - (납부) 회사는 매월 DSN 또는 PASRAU 신고와 동시에 과세관청에 등록된 SEPA (단일 유로 결제 지역) B2B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함⁹⁰⁾

86) economie.gouv.fr, “Comment procéder au calcul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en l’absence de taux de prélèvement employeur?,”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impots-prelevement-source-2019-entreprises-collecte#quels-sont-les-revenus-soumis-au_1, 검색일자: 2024. 11. 25.

87) NET-ENTREPRISES·FR, “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 DSN,” <https://www.net-entreprises.fr/declaration/dsn-info/#lessentiel>, 검색일자: 2024. 11. 25.

88) Urssaf.fr, “Déclarer les cotisations : la 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DSN),” <https://www.urssaf.fr/accueil/employeur/gerer-entreprise/declaration-sociale-nominative.html>, 검색일자: 2024. 11. 25.

89) NET-ENTREPRISES·FR, “Passage pour les Revenus Autres - PASRAU,” <https://www.net-entreprises.fr/declaration/pasrau/>, 검색일자: 2024. 11. 25.

90) impots.gouv.fr, “Comment déclarer et payer le prélèvement à la source ?,” <https://www.im>

- (처벌) 회사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됨⁹¹⁾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서당 최소 250유로 이상 부과되고 증첩되지 아니함⁹²⁾
 - 단순 누락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누락된 원천징수세의 5%
 - 기한 후 신고: 누락된 원천징수세의 10%
 -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누락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누락된 원천징수세의 40%
 - 원천징수 후 고의적인 무신고: 누락된 원천징수세의 8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세 미납부 시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⁹³⁾와 매월 0.2%의 연체이자가 부과됨⁹⁴⁾
- (형사처벌) 고의적 무신고 및 무납부한 경우 기간,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됨⁹⁵⁾
 - 원천징수 후 무신고 및 무납부로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1,500유로의 벌금
 - 3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위반: 2년의 징역 또는 3,750유로의 벌금

나. 종합소득세 신고

- (대상) 프랑스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당해연도 소득 모두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5~6월(2024년 기준)에 소득신고서(Formulaire 204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pots.gouv.fr/les-modalites-du-prelevement-la-source-0#ancrer6, 검색일자: 2024. 11. 25.

91) impots.gouv.fr, "IR - Prélèvement à la source de l'impôt sur le revenu -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lèvement -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retenue à la source - Recouvrement, contrôle, sanctions et contentieux," <https://bofip.impots.gouv.fr/bofip/11471-PGP.html/identifiant%3DBOI-IR-PAS-30-10-60-20220608>, 검색일자: 2024. 11. 27.

92)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759-0 A조

93)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731조

94)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727조

95)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771A조, 프랑스 형법 제131-13조

- (과세단위) 프랑스는 가족 단위(foyer fiscal)로 소득세를 부과하나 예외적인 경우⁹⁶⁾에는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매년 과세관청에 직전연도 소득을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서면 신고가 가능하며, 거주자 여부 및 거주지, 온라인 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게 적용됨⁹⁷⁾
 - 서면신고: 2024년 5월 21일 23시 59분 소인 날인분까지
 - 01~19 지역 거주, 비거주자: 2024년 5월 23일 23시 59분까지
 - 20~54 지역 거주: 2024년 5월 30일 23시 59분까지
 - 55~976 지역 거주: 2024년 6월 6일 23시 59분까지
- (처벌) 개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면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정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가중됨⁹⁸⁾
 - 기한 후 신고: 누락된 소득세의 10%
 -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소득세의 40%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 누락된 소득세의 8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득세 미납부 시 매월 0.2%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최대 1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⁹⁹⁾
 - 통지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소득세 납부: 매월 0.2%의 연체이자 부과(고의적인

96)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6조 제5항

97) [economie.gouv.fr](https://www.economie.gouv.fr/cedef/impot-revenu), “Impôt sur le revenu: informations pratiques,” <https://www.economie.gouv.fr/cedef/impot-revenu>, 검색일자: 2024. 11. 27.

98)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728조

99) impots.gouv.fr, “REC - Mise en recouvrement et paiement des impôts des particuliers - Impositions établies par voie de rôle - Sanctions encourues en cas de non-respect des dates et des modalités légales de paiement,” <https://bofip.impots.gouv.fr/bofip/1906-PGP.html/identifiant=BOI-REC-PART-10-40-20200630>, 검색일자: 2024. 11. 27.

-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표준 부족액이 5%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¹⁰⁰⁾
- 통지일로부터 45일 이후에 소득세 납부: 1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 부과 시 연체이자 규정 적용하지 않음)¹⁰¹⁾

다. 신고 절차¹⁰²⁾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당국에 징수자로 등록하고 사회보험기관인 URSSAF에 고용주로 등록해야 함
 - 과세당국 웹사이트의 전용 섹션을 통해 소득세 등을 납부할 계좌를 개설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
 - SEPA 자동이체로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등록은 필수임
- 예외¹⁰³⁾를 제외하고 모든 급여 관련 신고는 '사회보장명세서(DSN)'를 통해 이루어짐
 -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자적 급여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임
 - 엄격한 프랑스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법」이 반영된 전자적 급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편임
 - 다만 전자급여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은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모든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 관련 정보를 DSN으로 제출함
 - DSN은 급여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생성됨
 - 월지급액이 없더라도 매월 DSN을 발행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DSN을 통해 근로자와 관련한 데이터는 모든 사회기관으로 자동 통보됨

100)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727조 제2항, 제3항

101)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730조,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1727조 제4항2

102) EY, *Worldwide Doing Payroll Guide 2022-23*, 2022. 11., pp. 136~138.

103) DADS-U(항만노동자, 국외노동자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한 신고), DOETH(장애인근로자 신고) 등

- 이러한 사회보장기관으로는 Pôle emploi, CPAM,¹⁰⁴⁾ Urssaf, Agirc-Arco¹⁰⁵⁾ 등이 있음
- 근로자는 과세당국 웹사이트인 impots.gouv.fr의 ‘원천징수관리(Gérer mon Prélèvement à la source)’에서 근무 관련 변동사항(결혼, 출산, 퇴사, 승진, 소득변동 등)을 보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천징수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음¹⁰⁶⁾
 - 근로자가 근무 관련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면 동 자료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전송됨
 - 변동사항은 최대 2개월 이내 적용됨
 - 근로자의 업데이트가 끝나면 새로운 원천징수세율과 필요시 새로운 세액이 계산됨
 -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근무기간에 관한 사건은 업무의 중단(질병, 출산 등), 업무의 조기 재개(업무 중단 종료일 이전 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계약해지(퇴직 등) 등임
- 프랑스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고 원천징수세액이 적정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소득세통지서(TAX NOTICE)를 제공함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자동이체로 납부함
 - 300유로 이하이면 1회로 납부하고 300유로 초과이면 4회로 분할 징수함

104) Primary health insurance fund의 약어임

105) General Association of Employee Pension Institutions - Association for the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 for Employees의 약어임

106) impots.gouv.fr, “Gérez votre Prélèvement à la source dans : Votre espace particulier,” https://www.impots.gouv.fr/www2/minisite/services_en_ligne/gestpas/je-gere-mon-prelevement-a-la-source.html, 검색일자: 2024. 11. 27.

[그림 III-2] 프랑스의 근로소득세 신고관리

Avec "Gérer mon prélèvement à la source", je déclare :

- ▶ Un mariage ou un Pacs
- ▶ L'arrivée d'un enfant
- ▶ Un départ à la retraite
- ▶ Un changement de situation professionnelle


VOUS VOUS ÊTES DIT « OUI » ?
UN ENFANT EST ARRIVÉ DANS VOTRE VIE ?
VOUS AVEZ EU VOTRE PROMOTION ?
VOUS PARTEZ À LA RETRAITE ?
VOUS L'AVEZ DIT À TOUT LE MONDE ?

DITES-LE NOUS AUSSI !


Parce que la vie change et qu'elle est faite d'évènements heureux, et parfois moins heureux, prévus ou inattendus... grâce au prélèvement à la source, vous pouvez adapter votre impôt au plus près de vos changements de situation.

En effet, si le prélèvement à la source varie mécaniquement en fonction de vos revenus, le taux, lui, reste inchangé jusqu'à votre prochaine déclaration de revenus l'année suivante. C'est pourquoi, vous pouvez nous demander à le recalculer et le faire correspondre à votre nouvelle situation : demi-part supplémentaire pour l'arrivée d'un enfant, déclaration commune pour les mariages ou les Pacs, augmenter ou baisser son taux en cas de promotion, de départ à la retraite, de perte d'emploi...


L'objectif ? Ne pas faire d'avance sur votre impôt et réduire le montant potentiel qui vous sera remboursé ou que vous devrez payer l'année prochaine.




**Un mariage
ou un pacs ?**



**L'arrivée
d'un enfant ?**



**Un départ
à la retraite ?**



**Un changement de
situation professionnelle ?**

자료: impots.gouv.fr, "Gérez votre Prélèvement à la source dans : Votre espace particulier," https://www.impots.gouv.fr/www2/minisite/services_en_ligne/gestpas/je-gere-mon-prelevement-a-la-source.html, 검색일자: 2025. 1. 20.

4. 일본

- 일본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납부함¹⁰⁷⁾
- 일본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짐
 - ① 급여,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 ② 소득을 지급할 때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 ③ 소득지급액에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됨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함께 복구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하여야 함

가. 원천징수 의무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와 복구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는 학교, 관공서, 개인, 비법인사단이나 재단, 그리고 회사도 포함됨¹⁰⁸⁾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 지급하는 가사사용인의 급여 등은 소득세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¹⁰⁹⁾

107) 国税庁, “Gensen Choshu no Shikata,”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shikata_r06/pdf/16.pdf, 검색일자: 2024. 11. 15.

108) 「소득세법」 제6조

- (대상) 소득자는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구분되며, 각 소득자 별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구분됨
 -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 보수·요금, 기타 이익을 대상으로 함
 - 소득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이익을 대상으로 함
 - 소득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열거된 국내원천소득, 상장주식 양도소득, 기타 이익을 대상으로 함

〈표 Ⅲ-4〉 일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종류

소득자의 인격	원천징수 대상소득	관계법령
거주자 - 소법 2 ①③	이자 등	소법23, 181①, 조치법3의3①③, 4의4①, 6②, 9의3의2①, 37의11의6⑥
	2. 배당 등	소법24, 25, 181, 조치법8의2①, 8의3①③, 9의2②, 9의3의2①, 37의11의6⑥
	3. 급여 등	소법28, 183
	4. 퇴직수당 등	소법30, 31, 199, 조치법29의4
	5. 공적연금 등	소법35③, 203의2
	6. 보수·요금 등	소법204, 소령320, 조치법41의20
	7.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이 체결한 보험계약 연금	소법207
	8. 정기적금 등	소법174 3~8, 209의2, 조치법41의10
	9. 조합의 이익분배금	소법210
	10. 특정계좌 내 보관 중인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 등	조치법37의11의4
	11. 예금, 저축으로부터의 금전상여 등	조치법41의9
	12. 할인채권 상환으로 인한 이익	조치법41의12
	13. 할인채권 상환금액에 따른 이익	조치법41의12의2

109) 「소득세법」 제184조, 제200조, 제204조2의 ②

〈표 III-4〉의 계속

소득자의 인격	원천징수 대상소득	관계법령
법인 - 소법 2 ①6	이자 등	소법174 1, 212③, 조치법3의3②③, 6②
	2. 배당 등	소법174 2, 212③, 조치법 8의 2③, 8의3②③, 9의2①②, 9의3의2①
	3. 정기적금 등	소법174 3~8, 212③
	4. 조합 이익의 분배	소법174 9, 212③
	5. 경마의 상금	소법174 10, 212③
	6. 예금, 저축으로부터의 금전상여 등	조치법41의9
	7. 할인채권 상환으로 인한 이익	조치법41의12
	8. 할인채권 상환금액에 따른 이익	조치법41의12의2
비거주자 - 소법 2 ①5 외국법인 - 소법 2 ①7	국내원천소득	소법161①4~16, 212①②⑤, 조치법 9의3의2①, 37의11의6⑥, 41의22
	2.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진 비거주자가 특 정계좌 내 보관 중인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 등	조치법37의11의 4
	3. 예금, 저축으로부터의 금전상여 등	조치법41의9
	4. 할인채권 상환으로 인한 이익	조치법41의12
	5. 할인채권 상환금액에 따른 이익	조치법41의12의2

주: 소법-소득세법, 소령-소득세법 시행령, 조치법-조세특례조치법을 의미함

자료: 国税庁, 「源泉徴収のしかた」,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shikata_r06/pdf/00.pdf, 검색일자: 2024. 11. 15.

-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자는 고용주에게 근로소득 부양가족 공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급여, 원천징수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함
- (소득자 의무) 모든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근로소득 부양가족 공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높은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됨
 - (고용주 의무)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 등을 공제하고 급여, 원천징수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함

- 소득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득자가 요구하면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함
-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e-tax로 발송하거나, 우편 또는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납부기한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됨
- (특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납기특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거부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례 규정 적용

〈표 III-5〉 일본의 특례적용 시 원천징수소득세 납부 기한

귀속시기	납부 기한
1월~6월 원천징수대상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7월 10일
7월~12월 원천징수대상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다음 해 1월 20일

자료: 国税庁, "Gensen Choshu no Shikata,"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shikata_r06/pdf/16.pdf, 검색일자: 2024. 11. 15.

나. 연말정산(연간지급명세서)

- (시기) 해당 연도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해당 연도에 사망하거나 해외지사 발령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사망 또는 해외지사 발령된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

- (예외) 비거주자, 근로소득 부양가족 공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연간 급여 등의 지급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재해피해자에 대한 세금 징수의 면제·감면·연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가 중단되었거나 세액을 환급받은 사람, 중도퇴사자(사망자 제외) 등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
- (근로 지급명세서) 급여 등의 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급여 등의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 후 1개월 이내 제출이 원칙이나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도 허용) 1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1부를 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급여(임원, 전문직 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등의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급여 등의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급여 등의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부양가족 공제(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250만원(임원의 경우 5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부양가족 공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퇴직 지급명세서)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수당 등의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2부를 작성하여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1부를 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당해 연도 지급명

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예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소득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보수·수수료 등 지급명세서) 보수·수수료, 계약금, 상금 또는 의료수당의 지급자는 지급금액, 원천징수 세액, 지급자와 수취한 자의 납세자번호를 적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외)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의료 종사자, 프로 권투선수 등에게 연간 50만엔 이하의 보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연간 동일인에게 50만엔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연간 동일인에게 75만엔 이하의 승마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외 연간 동일인에게 5만엔 이하의 보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 원천징수 세액, 지급자와 수취한 자의 납세자번호를 적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외)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지급액이 연간 50만엔 이하이면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소득자 등의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소득자 등에게 발급하는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등의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음
- 지급명세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2년간 제출해야 할 신고부수가 총 100부 이상이면 e-tax, 광디스크,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신고 절차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함¹¹⁰⁾
-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에 급여, 지급일자,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총액 등 정보를 기입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후 납부함¹¹¹⁾
 - 과세관청 E-Tax 웹사이트, 우편,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직접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
 - 노동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은 연말조정(정산)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관청에 사회보험료 공제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디지털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과 데이터 활용 추진으로 온라인·간소화된 조세와 사회보험의 신고 절차 원스톱 서비스(社会保険·税手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를 제공하고 있음¹¹²⁾
- ‘마이너포털 API(マイナポータル)’¹¹³⁾를 통해 해당 포털에서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 등의 전자신고를 하나의 창구로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이너포털 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자의 동의하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용 급여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함

110) 国税庁, 「事業主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源泉徴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110.htm>, 검색일자: 2024. 11. 15.

111) 国税庁, 「令和5年分・源泉徴収税額表」,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zeigakuhyo2022/02.htm>, 검색일자: 2024. 11. 15.

112) 国税庁, 「納税者サービスの充実と行政効率化のための取組」,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torikumi/report/2020/02_6.htm, 검색일자: 2024.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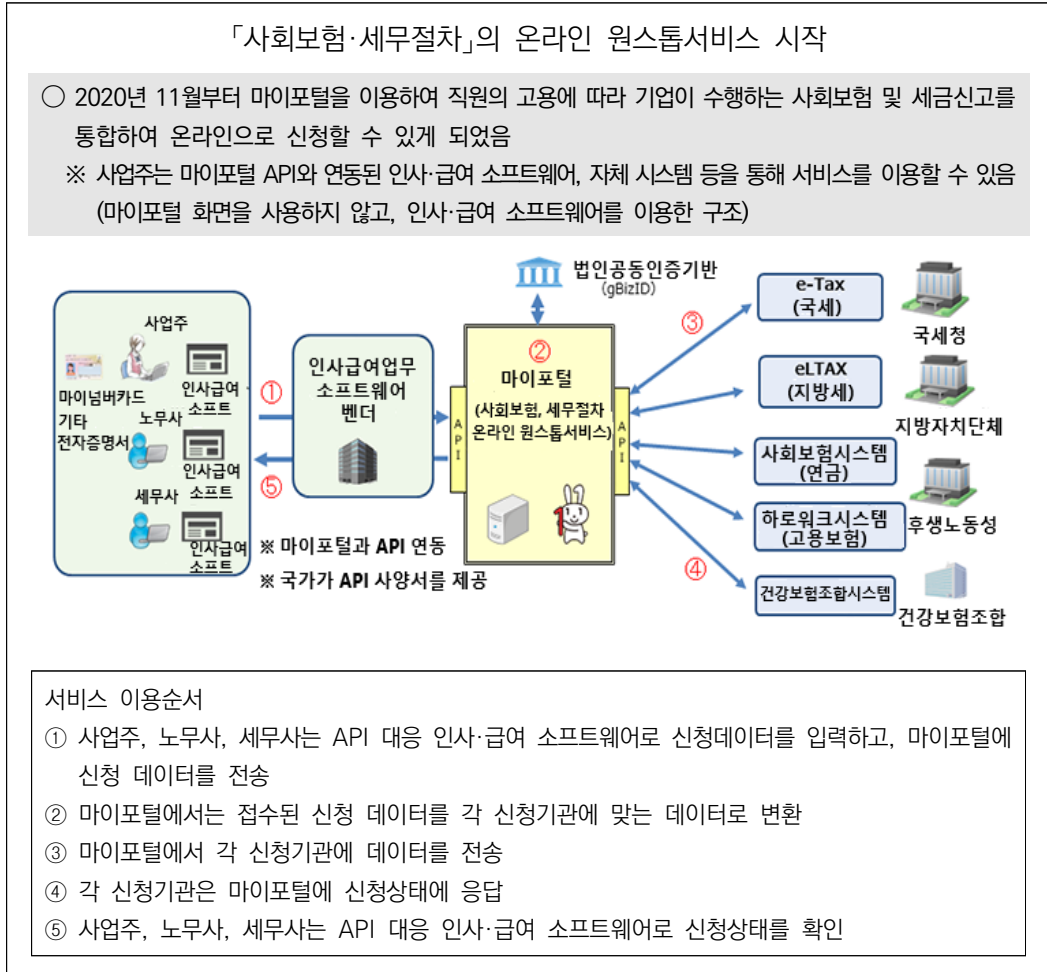
113) 마이너포털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너 포털 API 사양서의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사용자로 등록해야 하고, 현재 마이너포털 API를 제공하는 업체가 업데이트되고 있음

- 전자 증명서를 이용하여 전자 신청으로 계정 등록부터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연금 등)의 신청, 조회, 수정, 취하 기능을 제공함
 - 개인의 경우 마이넘버카드로 인증함
 - 법인공통인증 기반의 'G비즈니스ID'를 이용한 인증에 대응하여 인증방식(전자 증명서 또는 법인공통인증기반)마다 다른 인증용 API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마이너포털 API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음
 - ① 사업주 등은 급여 소프트웨어로 신고 데이터를 입력하여 마이너포털에 신고하고 ② 마이너포털에서 각 신청서 기관을 위한 데이터로 가공·변환 후 각 신청처로 데이터를 전송 ③ 각 기관은 마이너포털에 신고 상황을 보고하여 신고 상황을 확인하는 구조임
- 개인은 마이넘버카드¹¹⁴⁾를 발급하여 납세자의 세금, 소득내역, 지방세, 사회보험(연금 등), 노동보험 등의 가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조회할 수 있음¹¹⁵⁾
- 마이너포털을 이용하여 신고 시 납세자의 소득내역 등 데이터를 일괄 수집하고 신고서에 자동 입력되어 신고할 수 있음
 -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필요한 사회보험료 공제 증명서 등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음

114) 일본의 마이넘버는 사회보장제도, 세제,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횡단적인 공통번호로, 오프라인 신분증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적 개인인증을 위한 전자증명서를 탑재하여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마이너포털 온라인서비스로 세대정보, 세금·소득 정보, 건강보험, 복지, 노동보험 등에 대해 정보 확인 및 알림, 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15) 国税庁, 「マイナポータル連携可能な控除証明書等発行主体一覧」,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mynumberinfo/list.htm>, 검색일자: 2024. 11. 15.

[그림 Ⅲ-3] 일본의 마이너포털 API 구조



자료: 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 마이너포털 사양공개 사이트(マイナポータルAPI仕様公開サイト), 「「社会保険·税手続申請API」とは」, <https://myna.go.jp/html/api/tetsuzukishinsei/index.html>, 검색일자: 2025. 1. 20.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되며, 고의적 은폐·조작에 대해서는 증가산세가 부과됨¹¹⁶⁾

116) 「국세통칙법」 제68조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¹¹⁷⁾
 - 기한 후 신고: 5%
 - 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 누락된 원천징수세의 10%
 - 추가납부할 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누락된 원천징수세의 15%
 - 고의적 과소신고: 35%
 - 고의적 무신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이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10%, 기한 후 납부하는 경우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1개월 이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¹¹⁸⁾ 고의적 무납부에 대해서는 35%의 증가산세가 부과됨
- (형사처벌) 급여, 퇴직금, 보수·수수료 및 기타소득의 지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¹¹⁹⁾

117) 「국세통칙법」 제65조 제1항, 제2항

118) 「국세통칙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119) 「소득세법」 제242조

〈표 III-6〉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 파액을 위한 제도 비교

구분	실시간 소득 파액을 위한 제도	제출대상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정산 의무	제출 불성실에 대한 제재	제출에 대한 세정지원
한국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¹⁾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근로소득 중 상용근로소득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정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정산 · 기타소득의 경우 정산 의무 없음	· 연간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가산세 감면제도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제출에 대해 세액공제 제공
영국	PAYE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최종 지급명세서(final payroll report)를 통해 정산(별도의 서식이 아닌 지급명세서인 FPS의 최종보고를 의미함)	· 미제출: 근로자 수에 따라 정액으로 벌금 부과 · 과소제출: 잠재적 결손세입의 일부 부과 · 명세서 제출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고의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	· 소규모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스웨덴	PAYE	· 고용소득 · 연금소득	· 정산 의무 없음	· 미제출: 징액의 연체로 부과 · 과소제출: 잠재적 결손세입의 일부 부과	· 국제청 결정 이후 일정 기간 내 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 취소
프랑스	DSN PASRAU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	· 정산 의무 없음	· 미제출·과소제출: 잠재적 결손세입의 일부 부과 · 고의적인 경우 고용의 가산세, 벌금 또는 형사처벌	· 전자급여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없음 (프랑스는 대부분 엄격한 노동법이 반영된 전자급여프로그램을 사용)
일본	-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보수·수수료 등	· 최종 지급명세서를 통해 정산(일정 규모 이하의 지급소득에 대해 제출의무 면제)	· 미제출·과소제출: 잠재적 결손세입의 일부 부과 · 고의적인 경우 고용의 가산세, 벌금 또는 형사처벌	· 마이니포털 API를 통해 국제, 지방세, 사회보험 등의 전자 신고를 하나의 창구로 신고

주: 1)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간지급명세서로 제출되고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IV. 개선방안

- 본 장에서는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급명세서의 세무 행정을 활용하여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봄
- 먼저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이어서 현재 운영 중인 세무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를 통합하는 방안과 새로운 세무 행정 시스템인 급여계좌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함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완화 및 보완

가. 부과기준의 변경

- 우리나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액은 '지급금액'의 비례세율(최대 1%)을 곱하여 산정함
- 가산세 부과기준이 지급금액이기 때문에 동일한 불성실이라 할지라도 지급금액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짐
 -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이 1억원인 경우와 지급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액이 다름
- 본세인 소득세액보다 가산세액이 더 클 수 있음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난 뒤 과소제출 등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불성실에 대해 건당 일정 금액 또는 미납된 원천징수세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미제출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근로자의 수에 따라 최대 400파운드를 부과함
 -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도별 한 번의 지연신고에 대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함
 - 과소신고의 경우 올바른 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가산세를 경감하거나 부과하지 않음
- 스웨덴에서는 미제출 시 벌금 625크로나를 부과하며¹²⁰⁾ 미제출·과소신고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일정 기한 내 적정하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프랑스에서는 미제출, 과소신고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¹²¹⁾
 -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세금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할 권리’를 행사하여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소득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120) 스웨덴 국세청, “När ska jag lämna arbetsgivardeklaration?,”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arbetsgivare/lamnaarbetsgivardeklaration/narskajaglamnaarbetsgivardeklaration.4.361dc8c15312eff6fd13c11.html>, 검색일자: 2025. 1. 20.

121) impots.gouv.fr., “LE DROIT À L'ERREUR EN MATIÈRE FISCALE,”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le-droit-lerreur-en-matiere-fiscale>, 검색일자: 2024. 11. 25.

〈표 IV-1〉 주요국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비교

구분		한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미제출	부과기준	비례세율	정액	정액	비례세율	정액
	부과금액	지급금액의 최대 1%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400파운드	625크로나	원천징수세액의 최대 80% ²⁾	50만엔 이하의 벌금
과소제출에 대한 가산세		지급금액의 최대 1%	잠재적 결손세입(potential loss revenue)의 일부	원천징수세액의 5% ¹⁾	원천징수세액의 최대 80% ²⁾	50만엔 이하의 벌금

주: 1) 미제출·과소제출에 따라 과세관청이 통지한 후 일정 기한 내 적절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됨

2) 고의성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영국, 스웨덴, 일본처럼 미제출에 대해 건수별 정액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 보험 가입 등 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납세협력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제도별로 제재를 받고 있음

- 납세당사자인 소득자를 대신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다소 과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납세협력의 간소화를 위해 제도별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지급금액의 비례세율이 아닌 정액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가산세 제도와 비교했을 때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정액 금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또한 제출 횟수가 최대 12회인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연 1회의 미제출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임

- 영국에서는 각 과세연도에 한 번의 지연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프랑스처럼 본세인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음

- 2023년 4/4분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소득 기준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2,053만명¹²²⁾으로, 이 중 690만명¹²³⁾(약 33%)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음

- (과소제출) 납세협력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제출기한 내 이행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단순 착오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인해 수정 발급해야 할 때에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발급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를 의미함
 -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¹²⁴⁾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¹²⁵⁾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¹²⁶⁾
 - 단순 착오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 영국, 프랑스처럼 가산세를 조건부 면제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 사료됨
 - 현재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연간지급명세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음

나. 과태료 제도로 전환

- 현행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법상 가산세는 보통 미납 세액 또는 신고 의무와 연동되어 비율로 산정되는 반면,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 또는 범위 내에서 산정됨

122) 2,053만 4,714명

123) 690만 2,372명

124)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126)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1) 가산세 제도와 과태료 제도의 비교

- 가산세 제도와 과태료 제도는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임
 - 두 제도는 법규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수단으로 모두 금전적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 두 제도는 납세의무나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함
 -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 국세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에 따라 강제로 부과함
 - 가산세와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추가 제재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함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위반자에게 부과함¹²⁷⁾
 - 과태료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규정은 없음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됨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함
 -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과권자와 부과기준 및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정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127)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1&cciNo=2&cnpClsNo=1&search_put=, 검색일자: 2024. 11. 20.

〈표 IV-2〉 가산세와 과태료의 비교

구분	가산세	과태료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금전적인 제재 • 행정기관이 부과(국세청, 경찰청 등) • 법률에 따라 강제로 부과되며 미납 시 추가 제재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항(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를 정의하는 규정은 없음
부과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예: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일반 법률 등(예: 「도로교통법」, 「공공질서법」 등)
위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세금 납부 또는 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의무 불이행(예: 신고 지연, 납부 지연, 과세자료 미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 위반 행위(예: 불법 주차, 공공장소 무질서 행위 등)
제재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의 연장선상으로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유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벌칙
부과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미납 세액 또는 신고 의무와 연동되어 비율로 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행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 또는 범위 내에서 산정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보통 개별 세법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또는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임¹²⁸⁾

- 「국세기본법」에 따라 직무집행 거부, 금품 수수 및 공여,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질문·조사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와 자료제출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128) 2024년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함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 또는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주세법」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반면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로 부과하다가 가산세로 전환한 경우도 있음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가산세로 전환함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50%에서 20%로 낮추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따라서 현행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과태료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 현행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임
- 또한 과태료는 가산세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과태료 재판이라는 법원의 구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음

2) 국가기관 등의 제출 불성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는 가산세가 면제됨¹²⁹⁾
-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에 맞지 않음
 - 지급명세서는 세금 납부를 위한 신고서가 아님
 - 지급명세서는 납세당사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세협력으로 제출하는 신고서임
-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자료’로 국가기관 등이 지급하는 소득자료도 국세청이 수집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고 현재 부재한 납세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지급명세서 제도의 목적은 제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자료도 수집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자료로는 기관에 고용된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외에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일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등 현재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 수집해야 할 소득들임
 - 국가기관 등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자료를 활용한 국세통계 자료에 미제출한 소득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 현행 제도 내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해 국가기관 등이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29) 조심200873427

다. 제도별 또는 소득별 차등 설정

1) 소규모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이하 '소규모사업자'¹³⁰⁾)는 원천세 신고는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또는 월별로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일부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는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는 월별로 제출해야 함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함
 -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해야 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할 때 소규모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였음
 - 소규모사업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자의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1년간 면제하는 특례를 두려는 움직임이 확인됨
- 소규모사업자 특례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횟수를 줄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과 상충되므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사업자의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임

130)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의거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자를 의미함

- 이를 상용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제출에도 확대 적용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2) 연말정산 대상 소득의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 일부 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고 모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만을 적용함
 - 해당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되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은 완화하고 있음
-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모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모두 적용함
 - 현행 연말정산 대상 소득의 경우 연간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므로 연간지급명세서의 제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임
 - 한편, 납세당사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소득세 정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음

〈표 IV-3〉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유무에 따른 가산세 부과

구분	상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제외),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	○	-	×
연간지급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	-	○	-
모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	×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또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외에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¹³¹⁾
 - 근로자의 단순 착오 또는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음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인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보고 의무와 더불어 소득세 정산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인 소득에 한해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는 경우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부과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경감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을 떨어줄 필요가 있음
 - 다만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완화는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처럼 남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총액이 아닌 기재출한 내용의 불부합 또는 수정제출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합리적인

3) 소득의 종류 착오 제출에 대한 가산세 합리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¹³²⁾에 대해 적용하는데 ‘지급금액’뿐만 아니라 ‘소득의 종류¹³³⁾’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음

131)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검색일자: 2024. 11. 20.

132)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II장에서 기술함

- 소득 종류의 착오 제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임¹³⁴⁾
 - 소득 종류의 착오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함
-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또는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를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는 신고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음¹³⁵⁾
-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세액계산 방법, 소득·세액공제, 신고방법 등 납세의무가 달라짐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단일 근로소득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이 완료됨
 - 사업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됨(단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이 완료됨)
 - 기타소득은 소득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고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됨

[그림 IV-1] 소득의 종류에 대한 소명요청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사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추정되나, 귀사가 제출한 '23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용 지급명세서 대신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인적용역사업자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뒷면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귀사에서 소득 종류를 적정하게 분류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24.10.31. 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유형별 관련 자료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확인대상('23년)	
금 액	소득자 수
■■■■ 원	■■ 명

※ 표기된 금액의 상세 내역은 뒷장 자료명세 참조

자료: 네이버 블로그 사업불패, 「사업소득 근로소득 구분 쟁점」, <https://blog.naver.com/taxyesone/223636079882>, 검색일자: 2025. 1. 13.

133)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134) 원천세과-259(2012. 5. 11.)

135) TaxWatch, 「본업 따로 있는데...강의 줬다고 사업소득이라고요?」, 2024. 5. 16.,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4/05/16/0002>, 검색일자: 2024. 12. 5.

- 소득 유형의 경우 실질 판단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다만 각 행정부가 정책¹³⁶⁾을 시행하는 데 있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두기도 하므로 가산세를 무조건 완화하는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음

2.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 통합

- 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상 납세협력 의무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세법에 따라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을 이행함
 - 근로소득의 경우 각 사회보험공단으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해 다양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본 장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각종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봄
 - 현재 구축된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한 협력 의무를 간소화하거나 일원화하여 중복되거나 과도한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자 함

가. ‘소득내역확인’ 시스템

-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수집한 개인별 소득내역을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소득자에게 공유하고 있음
 - 소득자는 소득내역 확인을 통해 귀속연도, 지급월, 근무기간, 지급자 정보, 소득내역,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음

136)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는 직장가입자,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고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존재함
(생계비 지원, 돌봄서비스 등 복지정책) 대부분 건강보험료의 소득판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는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보수월액 판정이 상이함

- (소득종류) 근로소득(상용, 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용역제공 대가

[그림 IV-2] 소득내역 확인 및 소득부인 신청

조회기준 연도 2024 월 06 조회

본인 소득내역 총액 (근로·인적용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장제공자들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0		0	0	0

본인 소득 월별내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이지급명세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 * 제출 당시 상호이므로 현재 상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부인		귀속 연도	지급월	근무기간	지급자		소득내용		지급 명세서 보기	제출일자
근로 부인신청	처리상태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호	급여 등	인정상여		
신청하기									보기	

※ 지급명세서 보기는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외부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위소 및 내용 수정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근로사실 부인 및 지급금액 변경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호	
귀속연도		지급월	
소득내역	급여 등	당초	변경
	인정상여		
신청사유			
문자/알림 서비스	<input type="radio"/> 동의 <input type="radio"/> 동의 안 함 <input checked="" type="radio"/> 근로부인 신청 진행상황 안내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합니다.		

자료: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지급명세서·자료·공익-(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4&tm2Idx=440100000&tm3Idx=4401150000, 검색일자: 2024. 11. 15.

- ‘소득내역확인’을 통해 과세당사자인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자료 오류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소득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부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출내역 변경은 ① 근로사실 부인 ② 소득내역임
 - (인적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중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제출하면 소득자는 ‘소득내역확인’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없음
 - (소득자료) 소득자는 ‘소득내역확인’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본인의 소득자료를 급여 명세서와 비교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제출내역 변경을 접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신고인지를 판단함
 -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됨
- 영국 등은 우리나라의 ‘소득내역확인’과 유사한 원천징수 관련 소득확인 또는 원천징수세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소득자는 과세관청에 전송되는 본인의 세무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음
- 영국은 과세관청이 인증한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¹³⁷⁾하므로 소득자는 과세관청에 제출되는 본인의 소득내역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스웨덴은 고용주가 소득자로부터 세액 계산 시 필요한 정보(A-skattsedel)를 제공받아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과세관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정보(Mina inkomstuppgifter)를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는 과세관청 공식 홈페이지의 ‘원천징수관리(Gérer mon Prélèvement à la source)’에서 소득자가 직접 근무 관련 변동사항을 보고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송함
 - 일본은 디지털청이 운영하는 ‘마이너포털 API(マイナポータル)’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내역, 세금, 사회보험 가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소득자가 조회할 수 있음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소득자에게 ‘소득내역확인’을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 됨
- 원천징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과세관청 모두가 검증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어려워짐
 -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납세협력 부담은 높아졌지만 근로자는 매월 ‘소득내역확인’을

137) GOV.UK, “Payslips,” <https://www.gov.uk/running-payroll/payslips>, 검색일자: 2024. 12. 5.

통해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됨

나.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통합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됨
 -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기준, 공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공하는 서류임
 -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 등)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임금명세서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항목(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이 빠져 있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됨
 - 금액은 위반 정도, 횟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소규모사업자에 한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임금명세서 교부로 간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소득자는 국세청의 소득내역확인을 통해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착오, 누락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의 항목은 임금명세서의 항목에 비해 단순하므로 동 방안의 적용 대상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한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임금명세서의 항목을 줄여야 함
 -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다르고 입법 시 양 법의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그림 IV-3]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기본항목

성명 *	<input type="text" value="100byte 이내 입력"/>
지급일 *	<input type="text" value=""/>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임금지급내역 ①

급여제도*	<input checked="" type="radio"/> 시급 <input type="radio"/> 일급 <input type="radio"/> 월급
임금 항목	수당을 선택하세요.
기본급*	000,000,000 원
근로시간 *	<input type="text"/> 시간
시급 *	<input type="text"/> 원
지급액 계	임금 계산 000,000,000 원

공제내역 ②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0원 처리 합니다.)

공제항목	공제 내역을 선택하세요.
소득세	<input type="text" value="000,000,000"/>
국민연금	<input type="text" value="000,000,000"/>
건강보험	<input type="text" value="000,000,000"/>
고용보험	<input type="text" value="000,000,000"/>
공제액 계	공제 계산 000,000,000 원
실지급액	지급액 계산 000,000,000 원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https://www.moel.go.kr/wageCal.do>, 검색일자: 2024. 12. 5.

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4대 보험 변경 신고 연동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연간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총액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상용 근로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상의 사례를 응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의 소득변동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신고된 소득월액(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준 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 공단별로 제출함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률(20%)¹³⁸⁾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할 수 있음¹³⁹⁾
 - 건강보험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해야 함¹⁴⁰⁾
 -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소득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신고 또는 퇴직 시점에 퇴직정산으로 정산함¹⁴¹⁾

13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2023. 3. 22.,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42381&joNo=0009&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infSeq=6421>

139)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1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141)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2, p. 52.

- 나아가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득자료가 행정기관 간 공유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 관련 다양한 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납세환경이 조성됨
- 현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단서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관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할 수 있어 소득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관계기관의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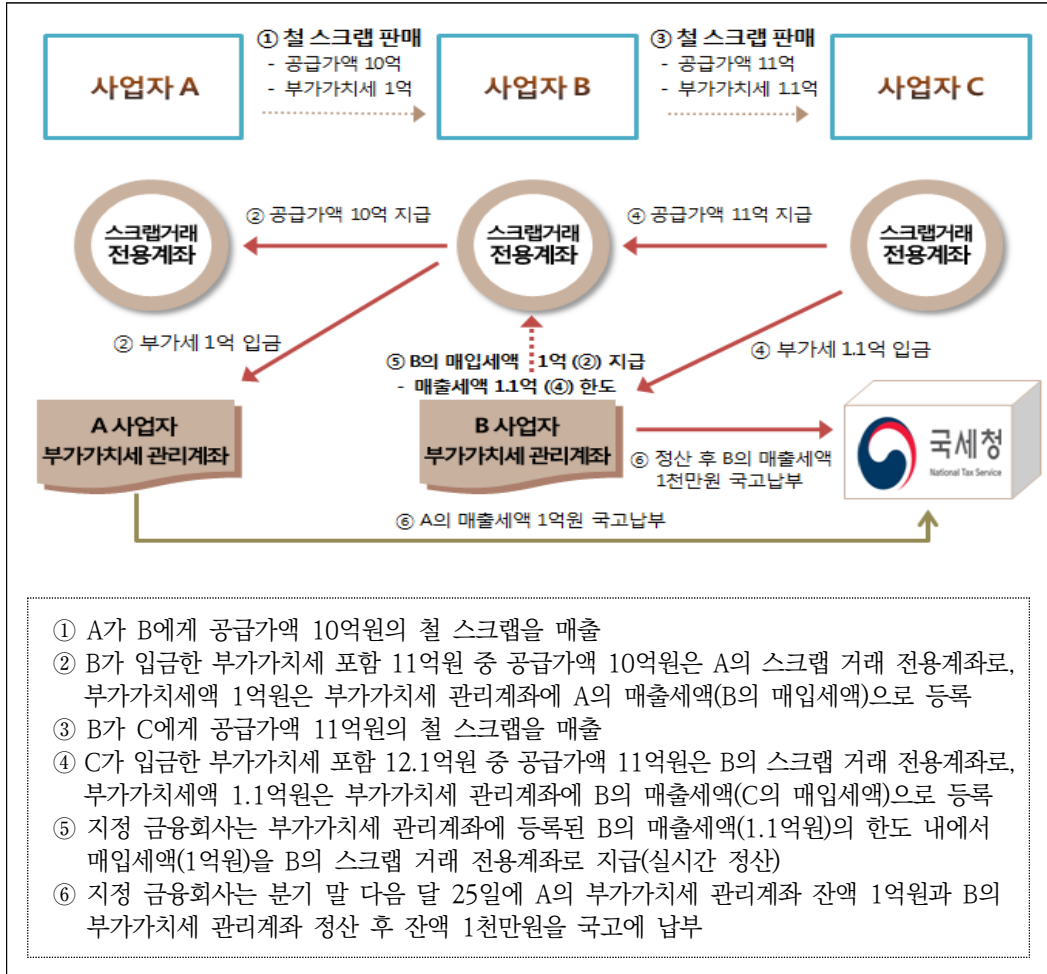
3.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가. 급여 전용계좌와 스크랩 전용계좌의 비교

- (매입자 납부제도) 과거 자료상 등이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국세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간에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실시¹⁴²⁾
 - 이후 고금(2009년), 구리스크랩(2014년), 금스크랩(2015년), 철스크랩(2016년) 등으로 법정 거래품목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까지 스크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고 있음

14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그림 IV-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거래흐름



자료: 국세청,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보도참고자료, 2016. 9. 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4030>, 검색일자: 2024.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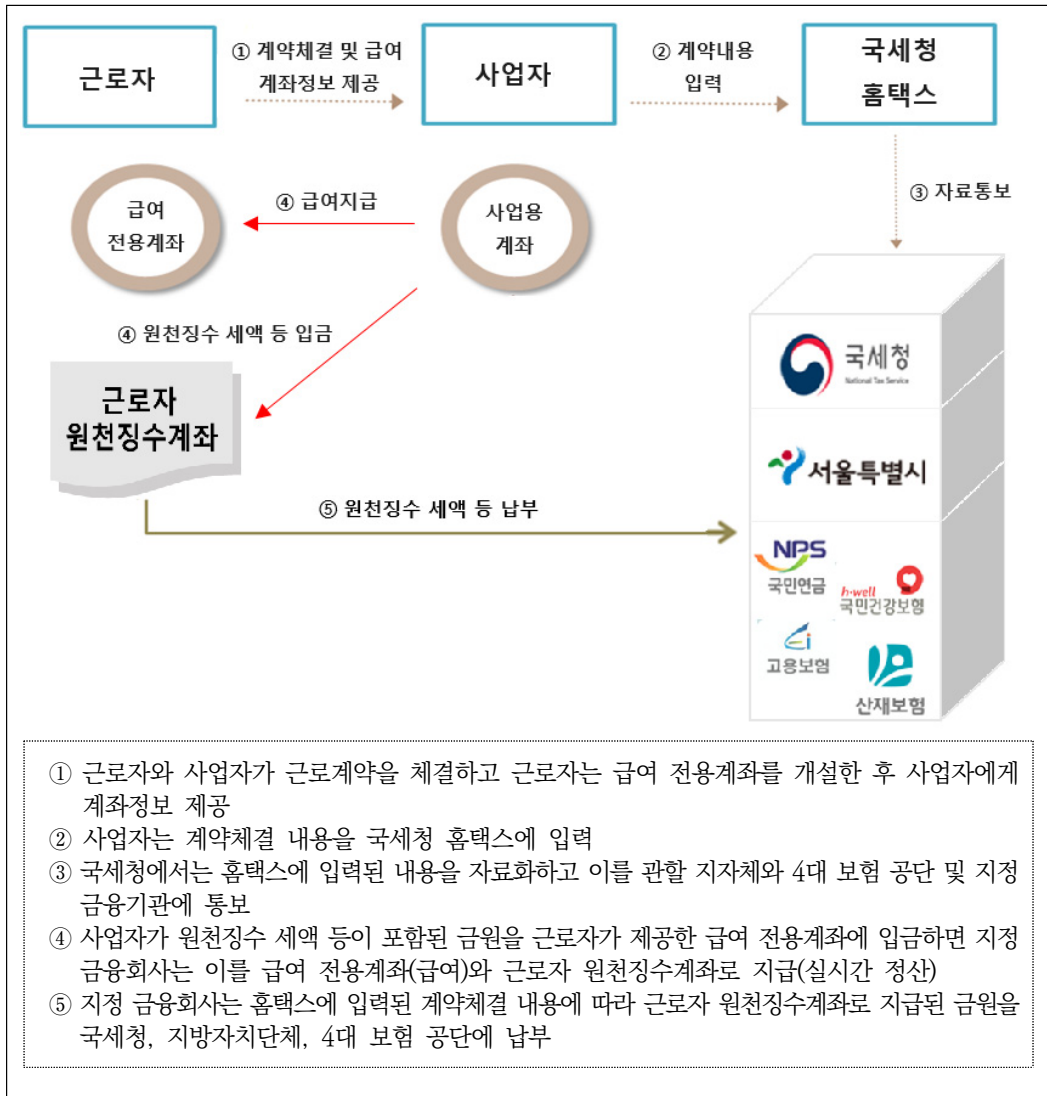
- (급여 전용계좌)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통하여 스크랩 거래 시 스크랩 전용계좌 사용을 강제하고 이를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급여 전용계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 (제도 개요) 급여 전용계좌 제도는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 명의의 급여 전용계좌로 총소득을 입금하게 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

- (계약체결 시) 용역계약 체결 시 소득자는 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번호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홈택스를 통해 용역계약 내용과 급여 지급조건을 설정
- 소득지급자는 계약 체결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내용과 급여 지급조건을 설정하면 되고, 계약내용이나 급여 지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소득자도 홈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지급자가 홈택스에 입력한 계약 내용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각 보험공단 및 지정 금융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됨
- (원천징수) 소득지급자가 계약내용과 급여 지급조건을 설정(변경)한 후 소득자의 급여 전용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하면 지정 금융기관이 수보한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과 보험료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각 보험공단에 납부
- (예외) 단 소득지급자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것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후금액으로 급여를 정하는 경우(NET) 등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 등을 직접 신고·납부
- (소득파악) 국세청에서는 수보한 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와 지급 자료로 활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시 급여 전용계좌로 지급
- 각 보험공단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 등에도 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통보하여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에 활용
- (지급명세서) 소득지급자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중도 퇴사자 포함), 용역제공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것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국세청에서는 급여 전용계좌 입금자료와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취합하여 인별 연간지급명세서 자료를 구축하고, 추가납부액이나 환급액 발생 시 급여 전용계좌에서 징수하거나 환급하고 구축된 자료를 타 기관과 공유
- 지방자치단체와 각 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이를 급여 전용계좌에서 징수하거나 환급

- (예외) 세후금액으로 급여를 정하는 경우(NET)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징수하거나 환급

[그림 IV-5] 급여 전용계좌 제도 거래흐름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기대효과) 급여 전용계좌 제도 도입 시 원천징수의무자, 국가기관, 소득자 측면에서 다양한 부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과중한 납세협력의무가 크게 경감됨
 - (국가기관) 국세청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소득자의 급여계좌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음으로써 사업자의 가공 인건비 계상 등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과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각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체납 발생에 따른 행정력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소득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 전용계좌 미입금 사실만으로 손쉽게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국세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수취함으로써 연말정산 환급금의 체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표 IV-4〉 스크랩 전용계좌 및 급여 전용계좌 비교

구분	스크랩 전용계좌 제도	급여 전용계좌 제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협력의무(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경감
전용계좌 개설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랩을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매출자와 매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을 지급받는 자(근로자)
전용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입금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전용계좌 사용 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 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3년 12월 31일 일몰기한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급여 전용계좌 사용 세액공제

자료: 저자 직접 작성

나.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 (시스템의 복잡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경우 스크랩 전용계좌 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급여 전용계좌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소득 내에서 비과세 급여, 상여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음
 - 시스템 복잡성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시스템 안내에 따른 행정력 부담이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급여 전용계좌 도입을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유지·보수해야 하므로, 고액의 시스템 도입 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금융기관 부담과중) 급여 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중한 납세협력의무가 경감되고, 국가기관에서는 행정력 부담이 경감되며, 소득자는 임금 체불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반대로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제도 도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의 상당 부분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급여 전용계좌 제도 도입 시 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시스템 장애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담할 민원 대응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함

- (개인정보 침해) 급여 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국가기관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소득지급자와 소득자 간 계약체결 내용 및 급여 등 지급 내역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됨

- 국가기관이 고유 업무 목적에 따라 소득을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계약내용과 급여 등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급여 전용계좌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가치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소결

-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완화 및 보완

- (부과기준의 변경)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지급금액이 아닌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한 건수별로 하는 방안을 제안함
 - 현행 제도는 불성실에 대해 가산세액을 지급금액에 따라 산출하여 본세인 소득세액보다 가산세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경향이 있음
 - 영국, 스웨덴, 일본처럼 불성실에 대해 건수별 정액금액을 부과하는 방안
 - 정액금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조건부 가산세 면제) 과소제출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 ①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수정에 대해 단순 착오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 ② 연간지급명세서의 과소제출한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 ③ 연 1회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
 - ① 방안은 단순 착오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② 방안은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연간지급명세서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③ 제출 횟수가 최대 12회인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연 1회의 미제출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영국의 사례를 응용하는 것임¹⁴³⁾

□ (과태료 제도로 전환) 지급명세서 불성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한편,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납세협력을 요구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 제도에서 과태료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다만 국가기관 등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는 가산세가 면제되어 국가기관 등의 제출 불성실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납세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함

- 지급명세서는 세금 납부를 위한 신고서가 아닌 납세당사자를 대신하여 납세협력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로, 국가기관 등이 지급하는 소득자료는 국세청이 수집할 필요가 있는 대상임

- 또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에 맞지 않음

- 과태료 금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제도별 또는 소득별 차등 설정)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특례, 연말정산 대상 소득, 소득 종류 착오 제출 등 제도별 또는 소득별 차등 설정 방안을 제시함

143) 일정 기한 내(현행 1~3개월)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의 일정 부분(현행 50%)을 감면해 주는데, 이러한 지연제출 가산세 감면규정과 연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와 ② 세액공제 제공을 제안함
 - 원천세 신고를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특례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원천징수 특례의 목적과 상충됨
 - ① 방안은 소규모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임
 - ② 방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¹⁴⁴⁾ 소규모사업자의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를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제출에도 확대 적용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¹⁴⁵⁾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만을 부과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을 제안함
 - 일부 소득¹⁴⁶⁾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고 모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만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연말정산 대상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제출하는 연간지급명세서를 통해 납세당사자의 소득세 정산을 대신하고 있고,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 외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의 납세협력이 다른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요구됨을 주장함
 - 다만 소득세 정산이 연간지급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한 연간지급명세서의 제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완화는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처럼 남용될 수 있음

144)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45) 상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14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인적용역 기타소득

- (소득 종류 착오 제출) 소득 종류의 착오에 대해서도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소득 종류 착오 제출에 대한 가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나.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 통합

-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통합) 소규모사업자에 한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임금명세서 교부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국세청은 ‘소득내역확인’ 시스템을 통해 납세당사자인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내역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통합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의 항목은 임금명세서의 항목에 비해 단순하고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달라 입법 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4대 보험 변경 신고 연동)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의 소득변동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세법의 간이지급명세서와 각 사회보험법의 변동신고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관계기관의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다.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크랩 전용계좌 제도와 유사한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의 적용을 제안함
 - 급여 전용계좌 제도는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 명의의 급여 전용계좌로 총소득을 입금하게 하는 제도임
 - 급여 전용계좌 제도 도입 시 ‘원천징수의무’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제외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의무가 크게 경감되며, 국가기관과 소득자에게도

- 행정력 부담 경감과 연말정산 환급금 체불방지 등 부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급여 전용계좌의 경우 시스템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세납세자의 시스템 접근에 대한 부담과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IV-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개선방안 제안 요약

구분		개선방안	고려해야 할 사항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부과기준의 변경	부과기준 조건부 가산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급금액의 비례세율 → (제안)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 건수별 정액금액 • 단순 착오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 • 연간지급명세서 과소제출한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금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 • 연 1회 지연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 • 현행 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현재 부재한 국가기관 등의 불성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 세액공제 •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부과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경감 • 가산세 완화
	과소제출	일반 국가기관 등 소규모 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소득 종류 착오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금액의 설정 • 단순 착오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 실효성 •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과 연계하여 설계 • 과태료 금액의 설정 • 유예기간 • 적용소득 확대와 적용기간 및 타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 연간지급명세서의 제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 •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완화는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처럼 남용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완화 방법
현재 운영 중인 세무행정 활동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통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임금 명세서 교부로 간주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의 항목과 임금명세서의 항목 분석 •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달라 입법 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4대 보험 변경 신고 연동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4대 보험 변경 신고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의 간이지급명세서와 각 사회보험법의 변동신고서에 대한 분석
새로운 세무행정 시스템 도입	급여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크랩 전용계좌 제도와 유사한 급여전용계좌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천징수의무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V. 결론

- (요약) 본 연구는 최근의 소득자료 제출 의무 변화 양상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함
- (현황) 2024년 12월 현재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및 관련 제재 현황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 지급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는 반기별(상용근로소득) 또는 월별(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연간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는 연별(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월별)
 - 한편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제공자 등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제출주기는 월별
 - 간이·연간지급명세서 미제출 내지 과소제출 등과 관련하여 불성실 가산세가 존재하며,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지급금액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는 건별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단기 개선방안)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선방안을 제안함
 - 우선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영국, 스웨덴, 일본과 같이 건별 정액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과소제출의 경우에도 단순 착오나 고의성이 없다면 프랑스와 같이 가산세를 조 건부 면제하는 등의 제재 완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한편 현행 세법상 국세청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상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과태료 전환은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 가산세 부과가 어려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지급명세서 성실 제출을 유도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규모사업자의 간이지 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의 종류 착오 제출에 대한 가산세 등도 합리 적인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개선방안) 이상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관련 개선방안에 더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납세협력의무 경감 방안을 추가로 제시함
- 우선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납세협력의무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를 통합하는 방안, 간이지급명세서 제 출과 4대 보험 변경신고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스크랩 전용계좌의 사례를 응용하여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소득 지급 시 소 득자 명의의 전용계좌로 해당 소득을 입금하도록 의무화하는 급여 전용계좌 제도 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제도 복잡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 급여 전용계좌 관련 시스템을 담 당하게 될 금융기관의 부담 과중 등이 우려되므로, 동 제도 도입에 앞서 비용-편익 분석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한계점) 본 연구는 최근의 소득자료 제출 의무 변화 양상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관련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여전 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액 부과 등을 제안하였으나, 그 적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함
-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의 통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4대 보험 변경신고의 연동 등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입법 방안과 통합 서식 등을 마련·제시하지는 못함
- 급여 전용계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편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못함
- 이 외에도 본 연구가 제안한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바, 후속연구를 통해 해당 내용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18. 7. 31.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3. 11. 30.
- 김경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조세법연구』, 29(3), 2023, pp. 9~71.
- 국세청,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보도참고자료, 2016. 9. 20.
-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2. 1.
- 김두천, 「지급명세서의 제출문제」, 『한국세무포럼』, 12(1), 2021, pp. 3~13.
- 박승식·박상연, 「납세협력을 위한 가산세 및 조세혜택 제도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103, 2022. 6., pp. 59~77.
- 박형준,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구성: 국세 과세 미시자료의 활용 사례」,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9권 제2호, 2022.
- 이한우, 「소득 관련 가산세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11(4), 2022, pp. 21~71.
- 임재혁,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30(1), 2024, pp. 187~242.
- 정지선·류병관, 「조세법상 불필요한 가산세의 폐지 및 과도한 가산세의 완화방안」, 『법학연구』, 21(2), 2013, pp. 123~149.

TaxWatch, 「본업 따로 있는데…강의 좀 했다고 사업소득이라고요?」, 2024. 5. 16.,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4/05/16/0002>, 검색일자: 2024. 12. 5.

EY, *Worldwide Doing Payroll Guide 2022-23*, 2022. 11.

2. 법령

「과세자료관리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스웨덴 「조세절차법」

일본 「소득세법」

프랑스 「조세일반법」

3. 판례 및 결정

국세청 서면질의 원천세과-259(2012. 5. 11.)

조세심판원 2008구3427

4.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네이버 블로그 사업불패, <https://blog.naver.com/taxyesone/223636079882>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economie.gouv.fr, <https://www.economie.gouv.fr>

HMRC, <https://www.gov.uk>

IBFD, <https://www.ibfd.org>

impots.gouv.fr, <https://www.impots.gouv.fr>

legifrance, <https://www.legifrance.gouv.fr>

MINT Formations, <https://www.mintformations.co.uk>

National Tax Agency JAPAN(国税庁), <https://www.nta.go.jp>

NET-ENTREPRISES·FR, <https://www.net-entreprises.fr>

Skatteverket, <https://www.skatteverket.se>

Urssaf.fr, <https://www.urssaf.fr>

verksamt.se, <https://www.verksamt.se>

マイナポータルAPI仕様公開サイト(일본 디지털청 마이너포털 사양공개 사이트), <https://myna.go.jp>

세정연구 24-0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발행 2024년 12월 31일
저자 최인혁·권정교·문교현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쇄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ISBN 979-11-6655-345-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24-0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9 791160 553459
ISBN 979-11-6655-345-5